

韓國漁業共同體의 成立과 存立樣態에 관한 調查研究*

——漁村契를 中心으로——

朴 光 淳

全南大學校 商科大學 副教授

차 례

I. 漁業共同體의 發展

1. 韓民族의 水界開發과 漁業共同體의 成立

1) 韓民族의 水界開發

2) 韓國에 있어서의 漁業共同體의 成立

2. 漁業共同體의 存立形態

—黑山島의 미역 共同採藻制의 경우—

1) 黑山島의 位置 및 略史

2) 黑山島의 經濟構造

3) 黑山島의 漁業共同體의 存立形態(20輯)

3. 漁業共同體의 變質

—海苔養殖業의 경우—

4. 漁業共同體의 分解

—特種漁業의 경우—

II. 漁業共同體의 現存樣態

—漁村契의 實態와 機能—

1. 漁村契의 實態

2. 漁村契의 機能

—要約와 結言—

3) 黑山島의 漁業共同體의 存立形態

1. 入會制度

먼저 우리들이 調査對象으로 하는 8個 標本部落의 一般狀況과 共同經營의 主體가 되는 漁業(村)共同體의 入會(戶)制度에 關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鎮里一區外 二區는 大黑山島에 位置하고 있는바 一區에는 面事務所와 支署, 中學校 및 國民學校와 教會(天主教會 및 長老教會) 等이 자리 잡고 있는 黑山島의 行政·文化·交通의 要地임과 同時에, 島內에서 人口와 農耕地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二區는 舊月城郡의 所在地로서 俗稱 邑洞이라 불리우며 지금도 마을 뒷 山에는 50餘m의 半月型 城趾가 남아 있는데 四方 2m 크기의 四角形 岩石으로 그 築工의 精密하고 規模가 웅대함을 엿볼 수 있다. 多村里는 鎮里에서 東北方으로

* 本研究는 東亞文化研究委員會의 研究補助費에 힘입은바 こゝ음을 밝혀둡니다.

2mile 가량 떨어진 多物島에 자리잡고 있으며 黑山島의 여러 마을 中에서 가장 水產物이 많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水里, 桃木里, 梧里는 多物島의 건너편 大苑島에 위치하고 있으며, 紅島는 鎮里에서 西方으로 14mile 떨어진 落島로 이 섬의 南北端에 각각 竹項(紅島里 一區), 石金(紅島里 二區)이라 불리우는 두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竹項에는 國民學校와 新舊敎會가 응립하고 있으며 石金에는 有名한 紅島燈臺가 位置하여 西北航路를 眷護하고 있다. 이 섬은 그 水石과 樹木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1964年 政府當局에 依하여 天然保護地域 第170號로서 指定되어 있다. 다음 表13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들 여덟마을은 桃木里와 邑洞을 除外하고선 비교적 큰 마을들이며 戶當 平均人口도 5.7名으로 꽤 큰 폭이다.

다음에는 入會資格, 即 共同體成員의 具有해야 할 資格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共同體의 membership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첫째 先代로부터 그 마을에 적어도 家庭 即 宅地(Hof)와 菜園(Wurt)을 包含하는 家屋을 지니고 살아 오면서, 둘째 漁業에 從事해야 한다. 이것이 共同體의 本ember가 지니는 基本資格인바 이러한 두가지의 基本的인 資格을 지니지 못한者は 原則적으로 그 部落의 村會(共同體)에 入會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境遇에는例外를 認證하고 있으니 即 外地로부터 當代에 移轉해 온 者로서 上記 基本成員이 지니고 있는 資格을 갖춘 者는 그들의 信賴 할 만한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받기 為하여 一定期間(옛날에는 普通 3年間, 지금은 大體로 1年間) 無料 혹은 本成員의 半畝의 持分을 받고 生產活動에 參加·奉仕한 後 一定額의 入會(戶)料를 村落에 納付한 者가 그 하나요, 둘째로는 本成員의 次男 以下의 男兒로서 成婚, 分家하여 獨立된 世帶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들의 境遇는 外來者와 같이 一定期間 테스트해야 할 必要는 없으나 大概 外來者的 半額에相當하는 入會料는 支拂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入戶料와 信義를 試驗하는 一定期間의 유예制度는 漸次 形式乃至 虛構化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即 入會를 為한 試驗(?)制度의 境遇 옛날(옛날이라고 하지만 村老들이 해아릴 수 있는 不過 數十年 前임)에는 적어도 3年以上 아무런 報酬(共同生產物에 對한 持分)도 없이 村落이 經營하는 共同漁業에 參加해야 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길어도 一年以上을 猶豫하는 일이 없으며 그것도 大概의 持分을 가지고 參加하고 있음을 볼 때 알 수 있는 일이다. 다음에 入戶料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一般的으로 本成員이 三年間에 收得할 수 있는 額을 標準으로 하였지만

表13> 標本部落의 入會狀況

(1964年末)

| | 鎮里一區 | 鎮里二區 | 多村里 | 水里 | 桃木里 | 梧里 | 竹項 | 石金 |
|-----------------|----------------|--------------|-----|-----|-----|-----|-----------|-----|
| 世帶數 | 195戶 | 55 | 138 | 98 | 41 | 70 | 105 | 68 |
| 入戶數 | 163 | 53 | 130 | 91 | 36 | 62 | 96 | 60 |
| 漁村契加入戶數 | 103 | 52 | 128 | 89 | 22 | 53 | 76 | 22 |
| 人口數 | 1,059名 | 343 | 760 | 594 | 255 | 438 | 584 | 392 |
| 世帶當平均人口 | 5.4 | 6.2 | 5.5 | 6.0 | 6.2 | 6.2 | 5.6 | 5.7 |
| 村專用海岸線의 길이 | 5.6km | 4.3 | 8.4 | 5.8 | 2.8 | 3.8 | 9.9 | 8.1 |
| 屯(班)數 | 8 | 3 | 4 | 4 | 2 | 3 | 3 | 2 |
| 共同採取·分配하는 水產物 | 미역 톳 石海苔 | 미역 톳 苔 | " | " | " | " | " | " |
| 共同管理·個別採取하는 水產物 | 영초 은영초 | " | " | " | " | " | 온영초 초전 | " |

資料：黑山面 刊「管內狀況」1965 및 調査委員이 現地踏査에서 蒐集, 整理한 것.

오늘날에는 一年分으로 하거나 아주一定額으로 固定化하는 傾向이 뚜렷이 나타나 있으며 마을에 따라서는 共同漁撈時 全成員이 모인 자리에서 간소한 주연을 베풀므로써 代하는例도 없지 않았으나, 大體로 上記 8個部落의 境遇는 外來者는 5,000원을 그가 本成員으로서 共同生產에 參加하게 될 해의 前年 末까지 納付하면 되도록 하고 있으며 分家者는 그 半額을 納入하는 것이 通例이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家宅를 지녀야 한다고 하는 條件은相當히 嚴格이 遵守되고 있는 形便이다.

그러면 왜 外來者와 分家者에 對한 入會에 있어서 이와같은 嚴格한 制限이 加해지는 것일가? 그 理由는 여러가지를 想定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重要한 것은 共同體成員의 膨脹을 阻止하려는데 있다. 成員의 膨脹과 함께 共同體가 專用 할 수 있는 生產의 터, 即 專用漁場이 比例의으로 擴張되는 境遇에는 成員의 增加는 問題視되지 않을 것이다지만 이미 可用漁場의 開發이 一應 終了된 後의 成員의 增加는 持分의 減少 나아가선 基本的生活에 對한 하나의 危脅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왜냐하면 一定程度의 科學技術의 發達과 그에 따른 社會的 分業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單純協業의 段階에선 一定程度以上의 勞動力의 增投는 오히려 限界生產力의 過減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生產力水準이 낮은 前近代社會의 基本的 社會關係인 共同體에 있어서는 成員의 自立要件으로서 반드시 Heredum의 保有를 要請했던 것이다. 이는 本來 原始共同態(*ursprüngliche Gemeinschaft*)라는 無階級과 無私有의 社會關係로부터 私有와 共有의 二重性을 갖는 共同體(*Gemeinde*)라는 社會關係가 誕生할 때 不動產으로서의 私有의 端緒가 宅地(Hof) : 菜園(Wuart)이라는 Heredum이 있고 이 Heredum이 약말로 共同體의 成員이 自立할 수 있는 物質的 基礎였다는 共同體의 基本原理를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原則에 따라 鎮里一區는 總 195世帶中 163戶만이 村會(漁村共同體)에 入戶되고 나머지 32戶는 除外되어 있는바, 그들의 構成은 外地에서 轉勤해 온 初中學校와 支署의 職員 및 教會의 聖職者등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面職員의 거의 全部와 마을에 商店을 經營하는 3世帶는 모두 入會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들의 出生이 原來 本部落으로서 그들은 價習에 따라 漁業을 모두 兼營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163戶는 大體로 家宅의 位置에 따라 20~21戶씩 單位가 되어 8個의 「동」(班, 혹은 「inyin」라고도 한다)으로 編成되어 內·外永山島와 마옹島를 包括하는 總延長 5,640m에 達하는 地先의 專用漁場을 八等分하여 年年이 돌아가면서(定期割替制) 共同採蘋에 從事하고 있다. 鎮里二區의 경우는 55戶中 53戶가 3동으로, 多村里는 138戶中 130戶가 入會하여 4동, 水里의 경우에는 98戶中 91戶가 入會되어 4동, 桃木里는 41戶中 36戶가 入會하여 2동, 梧里는 70戶中 62戶가 3동, 紅島里一區인 「대목」(竹項)의 경우에는 105戶中 96戶가 入會하여 3동, 「석기미」(石金)는 68戶中 60戶가 入會하여 2동으로 각각 分班되어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分班의 基準은 무엇이며 分班된 「동」(班)과 村落과는 어떤 關係에 있는지에 對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分班의 基準은 大體로 마을에 있어서의 家宅의 位置로 삼고 있으며 班의 크기는 最善을 다하여 同一하게 할려고 애쓰고 있다. 例컨데 「대목」의 境遇에는 1965年 여름 현재 總 105戶中 96戶가 入會되어 있는데 그들은 「陽地동」「陰地동」「中間동」으로 三分되어 있다. 萬一 이때 새로이 한 戶가 入戶하게 되면 新入戶는 今年엔 「양지동」…, 來年엔 「음지동」에 하는 式으로 다음 2戶가 後入하여 班員의 數가 完全히 均分될 때까지 「동」을 돌아가면서 共同漁業에 參加하지 않으면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班이 共同勞動과 그에 따른 共同分配의 單位가 되어 있기 때문에 班員의 多寡에 基한 不平等을

막으려고 하는 措置이며 이는 共同體 内部에선 完全한 平等과 友愛라는 共同體의 基本道德에서 緣由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둠(班)과 마을과의 關係는 어찌한가? 다시 말하면 「둠」이 共同漁業의 主體인가? 不然이면 마을이 共同漁業의 主體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關하여 結論을 먼저 말한다면 共同漁業의 主體는 어디까지나 마을, 即 漁村共同體요 「둠」은 單純한 作業上의 單位에 不過한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첫째로 成員의 新規入會와 規制를 村會가 決定하며, 둘째 共同漁場의 支配와 管理, 共同漁業의 時期, 共同漁業區域에 있어서의 密漁의 團束(統制)等主要한 事項이 班會가 아닌 村會에서 全村民의 意思에 依하여 決定되며 班은 單純히 作業時 人員動員과 生產, 分配등의 作業만을 管掌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點은 筆者가 全國 漁村契中 任意抽出하여 施行한바 있는 40個 漁村契(回答을 보내온)의 共同入會漁業慣行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그에 依하면 한 漁村契의 規模가 크고 따라서 그가 專用하는 漁場이 넓기 때문에 潮水 其他의 自然的事情으로 말미암아 一時에 作業을 完了하지 않으면 아니 월 形便에 있는 곳에서는 分班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班의 編成敘이 마을이 하나의 作業單位가 되어 生產에 從事하고 있는 村契가相當數 있음을 보아도 傍證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한가지 注意하여야 할 事實은 入會戶數와 漁村契加入戶數가 一致되지 않는다고 하는 點이다. 1964年末을 基準으로해서 볼 때 어느 部落을 莫論하고 혹은 2, 3戶 혹은 數十戶씩 入會戶數가 漁村契加入戶數를 능가하고 있다. 그러면 그 差異는 어디에 基因하는 것이며 入會戶로서 非漁村契加入者の 共同漁業參加는 어찌한가? 먼저 非漁村契加入者の 共同漁業參加與否에 對하여 살펴 본다면 적어도 8個 標本部落을 包含하는 黑山島의 境遇 모두 何等의 制約敘이 共同漁業에 參加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事實 即 共同漁業의 主體는 어디까지나 舊慣에 의한 入會制度에 根據하는 漁村共同體이며 漁村契는 單純히 法律에 의한 抽象的組織으로서 아직도 健在하는 漁村共同體를 吸收하지 못하고 있거나, 둘째로 漁村契自體가 本來 그立法過程에 있어서 入會慣行을 認證하고 그를 適法化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機構라는 事實을 意味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兩制度의 成員의 差異는 時間이 흐르고 따라서 法律上의 機構인 漁村契自體가 成長해 갈에 따라 漸次 非漁村契加入戶數를 吸收하므로써 解消될 것으로 생각된다.

2. 共同經營形態

一般的으로 漁業共同體가 存立하는 基礎는 두가지 側面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經濟的 側面이오. 다른 하나는 社會的 側面이다. 漁業共同體가 存立하는 經濟的 基礎는 무어니 무어니 해도 漁業生產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基礎的 生產手段인 漁場의 共同體의 占取=總有와 그에 基한 共同(入會)漁業慣行, 漁業生產을 補完하는 耕地 및 山林의 總有 및 共同放牧慣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土地的 規定위에서 展開되는 社會關係는 自然히 군團 族的 結合에 基한 強한 連帶感으로 나타나는데 이와같은 「죽음을 媒介로 하는 共同運命感」이 바로 漁業共同體를 支撐하는 社會的 基礎라 하겠다.⁷⁰⁾

(A) 漁場의 總有

우리들은 (1)項의 入會制度에서 社會的 基礎에 대해선 어느 程度 살펴 보았다. 그러면 經濟的 基礎는 어찌할까?

上揭 13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黑山島의 主產物은 미역, 天草, 은행초, 앵초, 石海苔, 뜬

70) 山岡榮市, 「漁村社會學の研究」 257~66面 참고.

뱅포, 진포等의 海藻類와 멸치, 조기, 정쟁어, 고등어等의 魚類가 있지만 漁村契가 共同漁業의 對象으로 하는 것은 主로 海藻類와 멸치等이다. 특히 미역은 總收入의 50%를 超過하는 重要한 收入源이다. 따라서 여기에선 미역의 共同採藻制(第一種共同漁業權)를 中心으로 共同(入會)漁業의 經營形態를 살펴 보기로 하자. 미역은 물론 餘他 海藻들도 모두 浦岸의 岩壁에 繁茂한다. 따라서 그곳 漁民들은 이 浦岸을 「갯발」혹은 「갯장」이라呼稱하며 혹은 미역 바위 각田이라고도 불러 마치 農村의 農民들이 田畠을 생각하듯 意識한다. 事實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本來 「갯발」은 耕地나 林野와는 그 利用形態만을 달리 할 뿐 엄연한 土地의 一部로서 前近代社會에 있어서의 「包括的인 富의 寶庫」인 것이다(現行 水產業法 第24條 2項이 漁業權을 物權으로 하고 土地에 관한 規定을 準用토록한 點을 상기하자!). 따라서 이들 漁民의 立場에선 이 「갯발」은 가장 아니 오히려 唯一하다고 말하리만큼 重要한 生產手段인 것인바 이 「갯발」은 當該 部落의 總有로서 漁村共同體가支配, 管理, 收益하고 있다. 여기에 漁業共同體가 存立하는 經濟的 基礎가 있다.

鎮里一區의 경우 마을 앞에 정립하고 있는 內·外永山島와 마옹島를 包括하는 總延長 5,640m의 海岸線을, 鎮里二區의 경우에는 村落의 左右를 둘러싸고 있는 海岸線과 마을 앞 작은 섬을 包括하는 4,300m를, 多村里는 多物島와 附屬島嶼를 總括하는 8,406m를, 水里, 桃木里, 梧井里는 大芻島와 附屬島嶼를, 三分하여 각각 5,672m, 2,795m, 3,840m를, 紅島一區와 二區는 紅島를 南北으로 兩分하여 前者가 9,906 m, 後者 8,136 m를 각각 專有하고 있다. 특히 紅島의 경우에는 南北으로 긴게 누워있는 섬의 한 허리에 두 마을이 境界를 別區하는 새 하얀 라인이 페인트되어 있어 그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꽤 印象的이다.勿論 페인트를 利用하는 이와같은 區劃法은 比較的 最近의 일이며 始初에는 바위의 생김새 其他地形 등으로 標識을 삼았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와같은 村境은 어떻게 해서 劃定되었는가? 村境이 問題되지 않을 始原時代는 論外로 한다면 적어도 오늘날과 같이 여러 村落이 定着하게 된 後 最初에는 예로부터 「마을 끝」을 基準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그곳 村老들의 한결같은 對答이었다. 그러나 「마을 끝」이라 俗稱하는 地先이 뚜렷한 경우에는 이렇다 할 紛爭이 없지마는 不分明하거나 混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紛爭이 빚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韓日合併後 「朝鮮漁業令」의 規制가 落島의 孤村에 까지 미치게 되고 1923年 黑山漁業組合이 設立되자 漁組가 中心이 되어 各部落의 村意와 習慣을 尊重하면서 測量을 通해 定해 놓은 것이 上記한 바와 같은 오늘날 各部落의 專用漁場이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새로운 區劃을 둘러싸고 재미있는 많은 얘기들이 傳해 오고 있는데 그 한가지만 들어 본다면 村意를 代表하여 測量에 臨席한 代表(有志)들 사이에 「당신네 마을은 人口는 적고 生產物도 많으니 그 便是 우리 마을에 양보하라 하여 담배 몇봉 막걸리 몇통 통으로 解決한 곳이 많았다」는 것이다. 아울든 黑山島의 경우 새로이 村境을 劃定함에 있어서 大體로 舊慣은 그대로 墨守되었으며 이렇다 할 入漁의 慣行도 없기 때문에 이따금 紙上에 報導되는 바와 같은 「미역바위 싸움」같은 것은 없는 形便이다.

(B) 共同漁業權의 慣行

다음에는 이와같이 漁業共同體가 總有하는 漁場은 어떻게 管理 利用되어 收益하는지. 바꿔 말하면 共同漁業權의 行使內容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무릇 土地一前近代社會의 富의 原基의 形態로서 가장 重要한 生產手段이오 勞動의 場所이다—의 總有를一般的 基礎로 하는 社會에 있어선 「有用한 諸勞動은 相互 獨立的으로 私事로서 營爲되는 일이 없으며

社會的 分業은 共同體의으로 編制되기 때 문에 自然發生的 分業에 基한 人間과 人間과의 共同體(Gemeinde)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가」 마련이다. 따라서 村落이라고 하는 하나의 生產有機體가 總有하고 있는 「갓발」은 徹底한 村落의 共同管理下에 두며 그 「갓발의 利用」(生産 그 自體)은 「自然發生的」인 限界를 넘어서지 못한 單純分業下에 共同體에 의하여 營爲되며 거기에서 나온 產物(富)은 一段 社會的 形態를 取했다가 共同分配라는 過程을 거쳐 個別化(私有化) 되는 것이 共同體의一般的인 再生產過程이오 原理인 것이다. 이와같은 一般原理는 黑山島의 경우 거의 原型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表13에서 보는대로 8個 標本部落을 中心으로 해서 볼 때 漁業共同體의 共同管理下에 있는 水產物은 미역, 뜬, 석해태, 天草, 앵초, 은영초 등인데 앞에 든 세가지 海藻類는 그것이 차지하는 經濟的 比重때문에 그 共同性이 強하여 共同採取・共同分配되고 있으며, 後三者는 그 產出量이 比較적 적고 따라서 그 經濟의 重要性이 低하기 때문에 共同管理下에 두어 그 採取時期와 解除時期 및 그밖에 必要한 事項만을 規制할 뿐 仄상 그 生產에 있어서는 共同勞動을 避하고 個別採取와 個別利用을 許容하고 있는 形便이었다. 그리고 亦是 13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어떤 水產物의 生產을 共同體가 規制할 것이나 하는 것은 一律의인 것이 아니고 마을마다 그 產出量과 經濟的 比重을勘案하여 對象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標本部落의 경우 「미역」을 主穀(?)으로 해서 徹底히 管理하고 있는 것은 一般的이었다.

다음은 미역의 共同採取를 中心으로 共同勞動의 形態를 살펴 보기로 하자. 黑山島의 미역은 大體로 陰五月初로부터 七月初에 걸쳐 年三回 採取한다. 봄부터 자란 미역이 가장 잘 繁茂할 때까지 기다려 온 마을은 適期가 오면 村會에서 採取日을 決定하여 「돕」을 中心으로 周知시킨다. 仄상 미역따는 날이 오면 「돕」을 指揮하는 「검장」(班長)은 班員을 駆려하여 自己 돋으로 出動케 한다. 이때 村前에서 외는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戶當 一人(共同體成員一人)씩은 반드시 參席해야하며 事情의 如何를 不問하고 當日 共同採取(共同勞動)에 빠지게 되면 그 回의 自己持分은 抛棄해야 한다. 이는 私的所有가 아닌 共同所有의 生產物의 持分權의 權源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만들어 내는(採取하는) 具體的 労動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出動한 「멤버」들은 自己「돕」의 成員中 누군가가 私的으로 所有하고 있는 배라 하드래도 「우리돕 배」라 하여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自己들 배처럼 함께 타고 自己「돕」으로 나가 共同으로 採取하게 되며 그렇다고 배의 所有主에게 特別히 補償하는 것도 아니다. 採取用具는 낫과 간단한 潛水具 및 4~5隻의 「돕」당 採取船이 全部이며, 男子들은 물위에 나온 部分을 아낙네들은 水中に 잠긴 部分을 潛水질해서 떠내오곤 하는 极히 自然的이요 原始의in 單純分業 以上的 採取法을 찾을 길은 없었다. 이렇게해서 採取한 미역은 배에 실려 村前에 가져오면 이제부터 共同分配에 들어간다. 分配方式은 마을에 따라 조금씩 相違한데 鎮里一區를 包含하는 大黑山島에서는 主로 저울을 使用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검장」이 呼名해서 나눠주되 먼저 總量을 測定하여 平均值를 내는 것이 아니고 대개 目測으로 어느 程度씩이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몇斤씩 分配해주곤 剩餘가 있으면 다시 얼마씩 주되 萬一 不足한 경우는 各成員들로부터 다시 조금씩 거둬 채워주곤 한다. 그러나 이때 呼名된 사람이나 누구나에 따라(저울질하는 사람과의 親近度에 따라) 저울추가 多少 振動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가벼운 是非가 벌어지는 수도 있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두 저울은 座針이나 막대저울을 쓰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5年前인 1954年 무렵만 하드래도 原始의in 自作저울, 다시 말하면 村前에 鐵棒을 방불케 하는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나무대를 水平으로 매어놓는다. 그 한 끝에 適當한 크기의 바위를 둑

어 츠로 삼고 다른 한 끝에 대 고닥을 달아 미역을 담는 用器로 쓴다. 여기에 한 고닥씩 담아 順配하되 剩餘가 있으면 몇번씩 되풀이 하는 것을 筆者 스스로 1954年 여름 우리들의 標本部落의 하나인 多村里에서 目擊한 일이 있었다.

서울 추의 振動에서 오는 不公平을 막기 為하여 紅島에선 아래와 같은 分配方法을 擇하고 있다. 同一 容量의 대 고닥을 미리 마련하여 모든 班員들을 멀리가게 한 후에 檢長과 그 助務員이 고루 나눠 담은 뒤에 班員들을 同時に 불러 自意대로 가져가게 한다. 아울든 成員間의 公平과 平等을 期할려고 最善의 努力들을 기울리고 있는 흔적이 역연하다. 그리고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이 共同採取에 不參한 戶는 文字그대로 不可避한 事情을 除外하고선 그 回의 分配에 參與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를 生產物을 分配하기 前에 마을의 共同經費를 捫出하기 為하여 그에 適當한 金을 控除하는 수도 있고 마을에 따라서는 基本產物인 미역만은 모두 共同分配하고 뒤에 말할 二次產物(은행초, 앵초)을 共同採取하여 그것으로써 經費에 充當하는 곳도 있다.

한便 한 둘이 今年에 採取한 둠장은 來年에는 다른 둘이 採取하는 式으로 每年 定期割替하고 있다. 이는 中世 西歐의 村落共同體에서 볼 수 있었던 耕區(Gewann, furlong)制度와 그것을 輪作했던 定期割替制를 그대로 방불케 하는 것이다. 定期割替制度는 한 마을이 占取하고 있는 土地(漁場)라 하드래도 位置와 肥沃度等의 諸自然的 條件—여기에선 潮水와 水溫等의 自然的 條件—에 따라 耕區마다 生產條件의 差異에서 오는 不公平을 人為의 으로 克服하려고 하는데서 緣由하는 것이며 이는 對內의 平等과 友愛를 基本道德으로 하는 共同體의 生理가 要請하는 基本的 制度인 것이다.

(C) 共同體規制—耕區強制

다음에 우리들은 西歐 村落共同體에서 볼 수 있던 耕區強制(Flurzwang)를 우리들의 漁村共同體에서도 그대로 찾아 볼 수 있다. 耕區強制란 開放耕地制度(Open Field System)에 있어서의 成員相互間의 원활한 耕作과 收穫을 위해서 마련된 把種日, 耕耘日, 收穫日等의 指定, 他人의 地條에의 侵犯者에 對한 處罰, 把種의 種類의 指定등과 같은 檢制制度로서 그 規制力의 根源은 原生的인 「共同態規制」(gemeinschaftliche Regel)에 根據하고 있는 것이다.

黑山島의 漁村共同體가 採取日, 禁制日과 같은 共同生產時期를 規制한다 함은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이밖에도 解制期가 아님에도 不拘하고 統制를 어기고 密漁(探)했을 경우 그 어긴 度가 弱한 경우에는 當該年の 共同採取에 參加 할 資格만을 박탈하거나 그에 대한 非協助로서 證징한다. 一般的으로 「傳統的인 社會에선 儻習의인 關係를違背한 個人에게 集團의 協助를 拒絕하는 制裁만큼 견디기 어려운 制裁가 없기」⁷¹⁾ 때문에 非協助와 冷笑는 훌륭한 規制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 度가 크다면 그밖에 村意와 儻習에 크게 어긋난 行動을 한 者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追放이라는 嚴罰로서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追放된 者는 적어도 그런 情을 知悉하는 이웃 마을에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는 文字 그대로 「社會의 真空地帶」에 떨어지게 되므로 村落共同體의 規制에 順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規制力은 크게 弱化되곤 있지만 本來 共同態規制는 傳統的 支配力에 基하므로 아직도 共同漁業을 管掌하기에는 足하리 만큼 強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侵犯者가 他部落民인 경우에는 그 村落에 대하여 毅상을 要求하고 그에 不應하는 경우에는 마을과 마을의 싸움으로 피의 判決을 내린 수도 있지만 요즘에 漸次 法에 指訴하는 事例가 많

⁷¹⁾ E. Hagan,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1962, p. 72,

아지고 있다. 以上은 經濟生活에 基本되는 미역과 끗, 石海苔에 대한 共同經營의 그 形態이었거니와 洋초나 은행초, 혹은 天草(紅島의 경우)와 같은 比重이 떨하는 產物의 經營은 어찌한가? 紅島를 除外한 6個部落에선 自然的 條件으로 말미암아 天草는 자라지 않으며 洋초와 은행초만이 共同管理의 對象이 되고 있다. 이들 海藻類는 濫伐로 因한 再生産構造의破壞를 막기 為하여 漁村共同體가 그 生產時期와 解除時期등을 管理하고 그 生產(採取)과 利用(分配, 消費)에 關해서는 全的으로 個個 成員의 私的 生產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이들 海藻類는 最盛期가 닥아와서 村會가 그 禁制를 풀면 집집마다 그 必要와 能力에 따라 마음대로 採取해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와같은 二次的 產物에 대한 共同管理와 個別生產의 制度를 어떻게 解釋해야 할 것인가? 成員의 必要와 能力에 따라 마음대로 몇사람이라도 나가서 生產(採取) 해 온다고 하는 制度는 얼핏 보기에는 共同體內에 크게 個別化——私有化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좀 더 仔細히 살펴 본다면 이는 그와 正反對의 事實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基本的 產物을 共同生產하되 順次 各成員의 形便—即 家族의 크기와 需要의 程度—to考慮함이 없이 均分해 버린다. 이는 形式上의 平等이오 事實上의 不公平이라는 矛盾을 빚어 낼 우려가 크다. 이와같은 矛盾을 除去하고 最少限의 共同體內部의 均等한 需要充足을 為해서는 家族이 많고 따라서 그 需要가 큰 成員에 대해서는 어떤 補完策이 要求되는 것이다. 그들은 二次의 중요성을 지닌 天草나 은행초와 같은 海藻類를 嚴格한 管理下에 두되 그 利用은 各成員의 必要와 能力에 맡기므로써 成員의 經濟生活의 實質的平等(materielle Gleichheit)을 期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原理는 前近代社會의 共同體의 社會關係에서는 그들 共同體의 再生産이 되풀이 되는 過程에 있어서一般的으로 널리 지켜 내려온 原則이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이와 비슷한 制度를 Rig-Veda 時代 以來의 印度의 村落共同體의 遺制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⁷²⁾ 아울든 韓國의 漁業共同體도 天草나 은행초와 같은 比重이 적은 產物의 利用을 各者의 必要와 能力이라는 實質의 平等의 原則으로 補完하므로써 共同體成員의 對內의 平等을 期하고 그에 依據해서 最低限의 基本的 需要充足이라는 再生産構造를 支撐해나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밖에도 山林의 總有와 그에 따른 共同放牧의 儻行 및 村祭의 共同執禮와 같은 共同體를 存立시키는 많은 지렛대가 存在하고 있지마는 漁村共同體가 아닌 漁業共同體를 問題視하는 本研究에선 紙面 關係上 그에 對한 分析은 割愛하기로 하겠다.

第三節 漁業共同體의 變質

—海苔養殖業의 境遇—

1. 漁業技術의 發達과 共同體

以上에서 우리들은 黑山島 八個部落의 共同採藻制를 中心으로 하는 漁業共同體의 經營形態를 살펴 보았다. 이미 第2節의 序頭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黑山島는 陸地에서 40餘mile이나 떨어진 孤島라는 點과 그 곳에서의 共同漁業의 對象이 거의 資本이나 發達된 漁撈技術을前提로 하지 않는, 即 原始的 漁法으로도 可能한 미역등 海藻類의 採藻이기 때문에 그것을 管理하는 共同入會漁業의 經營形態는 거의 原型 그대로 存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72) 崔文煥外, 「經濟史」 44~45面 參고

그러나 韓國의 漁村이 모두 黑山島와 같이 近代的인 漁撈技術의 導入에 外面할 수 있는 落島만이 아니며 또한 모든 漁業이 空手와 單純協業을 바탕으로 하는 原始漁法으로 營爲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漁撈技術의 發達과 그에 따른 大規模 漁業 및 새로운 漁業의 發生은 自然이 漁場의 利用自體에도 變貌를 가져오게 하며 그 結果 漁業共同體의 樣相도 달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節에선 共同入會漁業의 共同性을 弛緩乃至 變質케 하는 要因은 무엇이며 그려한 要因의 作用에 따른 共同入會漁業의 變貌相은 어떠한지에 關해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먼저 共同性을 弛緩케 하는 要因은 두가지 側面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하나는 漁業技術의 發達을 中核으로 하는 自然科學的 技術的 側面이오, 다른 하나는 資本形成을 中心으로 하는 漁業 및 漁村의 社會經濟的 側面이 그것이라 하겠다. 漁業技術의 發達은 魚種의 面에서는 靜的인 海藻類의 採取로부터 漸次 動的 魚類의 捕魚에의 方向으로 나아가는 한便, 漁場利用의 面에선 内水面・沿岸漁場→近海漁場→內水面・沿岸漁場에 있어서의 特殊的인 養殖場→遠洋漁場→深海漁場→淺海漁場에 있어서의 一般的인 養殖場(淺海增殖場)에로 擴張케 하고 있음은 이미 言及한바와 같다. 入會・共同漁業은 採藻나 捕魚의 어느 경우에나 成立할 수 있는 것이지만, 捕魚가 벌써 近・遠洋과 같은 곳에서 營爲되는 경우에는 存立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들어야 할 事由는 入會・共同漁業乃至 漁業共同體가 專用해야 할 漁場이 近・遠洋에 있었던 排他 獨占의으로支配 할 수 없기 때문에 所有(總有)라는 關係가 成立할 수 없으며, 둘째 近・遠洋에서 營爲되는 漁業은 發達된 生產手段 即 크고, 빠른 漁船과 漁具를前提로 하는바 그것은 많은 資本을 所要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漁業技術의 發達은 漁業共同體와 關係지위 를 때 大體로 漁業共同體를 解體시키는 方向으로 作用해 왔다. 그러나 漁業技術의 發達度의 如何에 따라 그 作用의 波及効果 또한 달랐던 것이니, 漁業技術이 一舉에 漁船의 動力化와 鋼造化, 漁具의 科學化와 같은 產業革命을 完遂할 수 없었던 뒷으로 漁村의 共同體도 一時에 解體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即 漁業技術의 發達度와 漁業共同體의 共同性은 相關關係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韓國의 漁業技術의 停滯乃至 後進性은 그대로 漁業共同體의 停滯性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왜, 혹은 어떻게 漁業技術의 發達은 漁業共同體를 變貌乃至 解體시키는 것일까? 그 過程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漁業技術의 發達이 낮고 따라서 漁業生產力이 弱弱하여 人類의 海洋開發이 自然에 生育繁茂하는 魚介藻類의 單純한 採取에 그치고 있는 경우에는, 人間은 孤立된 人間의 弱弱한 힘 그 自體때문에 共同勞動(生產)을 必然之事로 하며 生產에 所要로 하는 基本的 生產手段인 漁場에 대해 서로 共有하게 되는 것임은 이미 여러차례 말한바와 같거니와 따라서 漁村共同體는 이 段階의 人類가 가질 수 있는 唯一한 이 社會關係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漁業技術의 發達이 이루어져서 動力化된 漁船과 科學的인 漁具가 登場하여 相對的으로 狹少한 沿岸에 머물지 않고 넓은 近・遠洋과 深海에로 進出하여 積極的으로 海洋을 開發하는 段階에 이르면 人類(漁民)의 社會關係는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때에 있어선 이른바 近代化乃至 個別化 即 資本制의 樣式으로 對替되었음이 歷史의 普遍的 發展過程이었다. 아울든 이 段階에선 共同體라는 人間의 社會關係는 止揚되거나 存續하드래도 社會의 二重構造의 一偶에서 衰殘되어 갈 수 밖에 없다. 왜 그런가? 共同體가 存立하는 基本的 바탕은 두가지라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共同勞動이다. 「土地가 富의 어머니인 것과 같이 勞動은 富의 아버지」라고 일러지듯이 적어도 前近代社會에 있어선 大地(自

然)라는 天與의 寶庫를 열고 그곳에 珍藏되어 있는 富를 그침에 내는 열쇠야말로 바로 勞動인마, 이 경우의 勞動은(勞動生產力이 微弱함 때문에) 相互獨立된 私事로서 營爲됨이 없이 社會的 形態로서, 바꿔 말하면 共同勞動으로서만 存在하는 것이며, 共同勞動(生産)은 生產物의 共有→生産의 共同化라는 過程을 거쳐 人間相互間의 社會關係를 共同體化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技術의 發達에 따른 勞動生產力의 增大는 勞動을 相互獨立된 私事로서 營爲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그 勞動의 生產物을 처음부터 個別化해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存立하는 共同體는 變質되거나 解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바탕은 基本的 生產手段의 共有·總有이다. 漁業에 있어서의 基本的 生產手段이란 무엇인가? 自然要素로선 土地(의 一利用形態), 即 漁場이오, 經濟的 要素로선 漁船과 漁具를 말한다. 그런데 漁業技術의 發達이 낫아 漁船과 漁具가 幼稚한 始原時代엔 漁場이 자연 가장 basic의이오 核心의 要素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漁場의 領域은 經濟的 要素의 發達에 制約되는데 이루렵의 낫은 漁業技術로선 必然적으로 相對的으로 限定되어 있는 沿岸漁場에 蝦集하지 않을 수 없다. 相對的으로 限定되어 있는 沿岸漁場에 있어서의 完全漁業을 為解せ 當然히 所有라는 支配關係의 確定을 要求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漁村共同體의 地先水面의 總有라는 專用的 支配關係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漁場의 總有를 바탕으로 漁村(業)共同體는 存立하게 되는 것임도 이미 上述한바 있었다. 그러나 漁業技術의 發達에 따른 漁船의 大型, 鋼造, 動力化와 漁具의 科學化는 漁場을 排他 獨占的 支配關係가 成立할 수 없는 遠洋과 深海으로 擴張하므로서 漁村(業)共同體의 存立의 基盤을 혼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大型化되고 科學化된 漁業生產手段의 裝備 그 自體에 많은 資本을 所要로 하므로써 亦是 漁業共同體의 基盤을 혼들어 놓게 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漁業技術의 發達은 漁業共同體의 存立의 基盤을 혼들어 놓으므로써 究極에 있어서는 漁業共同體와 그에 의한 入會·共同漁業을 止揚列 하는 것이지만 技術의 發達이 한꺼번에 一國의 漁業全般에 擴延되어 이론바 漁業의 產業革命을 完遂하므로써 漁業의 單一構造-資本制의 大規模漁業一를 形成하지 못하고 아직도 原始의이오 零細한 漁家漁業을 包含하는 二重構造를 堅持하는 곳에서는 漁業共同體와 共同漁業은 變質된 채로 그 命脈을 維持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漁業技術의 發達에 따른 漁業共同體의 解體의 過程에 對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技術의 發達은 一般的으로 두가지 출기를 타고 漁業共同體에 作用해 온다. 하나는 漁業技術의 發達이 그 產業革命이라 할 수 있는 漁船의 動力化와 漁具의 科學化를 通해 漁業自由가 公認되는 近·遠洋과 深海으로 뻗치는 경우에는 외로부터 共同(入會)漁業은 成立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成立된 資本制 漁業의 經濟構造가 漁村共同體에도 逆波及하여 共同體를 解體하는 方向으로 作用하지만 그러한 波及力은 漁業의 產業革命이 完遂될 때까지 全般的인 것이 되지 못한다.

다른 하나의 출기는, 漁業技術의 發達이 漁村共同體가 總有하는 專用漁場 内部에서 새로운 漁業의 發生이라는 形態로 이루어 졌을 경우, 即 沿岸의 갯벌을 自然要素로 하는 定置網漁業과 地引網乃至 船引網漁業 및 養殖漁業으로 나타났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技術의 發達에 比例하여 漁業에의 資本投下는 增加되고 따라서 私的 生產의 度는 增加되어 가지만 그것들이 발판으로 하는 漁場이 共同體의 專用漁場 바로 그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共同體와의 關係를 全的으로 斷絕하지 못한채 共同(入會)漁業의 範疇안에서 共同體를 變質시

키는 素因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注意하여야 할事實은 漁業에의 資本의 投下度와 漁業의 個別化, 即 入會·共同漁業의 解體와는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다는 點이다. 具體적으로 말하면 같은 浦岸의 갯벌을 漁場으로 하면서도 定置網이나 船引網漁業과 같이 그 施設과 運營에 莫大한 資本을 所要로 하는 漁業—이것을 特種漁業이라 命名하자—은 일찍부터 資本制 漁業으로 發展한 反面, 養殖漁業과 같이 資本의 投下度가 比較的 적은 分野에선 아직도 入會漁業의範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런 視角에서 本節은 養殖, 특히 海苔養殖業을 主로하는 漁村의 漁業共同體의 變質樣相을, 다음 第四節에는 船引·定置網등 特種漁業에 있어서의 共同漁業의 分解過程을 각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海苔養殖漁業의 登場

우리나라에 있어서 海苔를 언제부터 養殖하기 시작했는가에 對하여는 研究史의 現段階로 신 確認하기 어렵다. 海苔는 李朝時代에 있어서의 唯一한 養殖海藻類로서 그 年代는 約 300年 以前으로 暫定의 结論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韓國 最古의 地理書로 알려진 「慶尚道地理志」에는 東平縣, 蔚山郡, 東萊縣, 長鬱縣, 邊日縣, 安東大都護府의 土產貢物條에 他 水產物과 함께 「海衣」라는 이름으로 海苔가 실려 있는 바, 이로 미루어 보면 海苔를 採取 利用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540年前의 일이라 推定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는 海苔가 養殖되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오 石海苔가 採取·嗜食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음에는 海苔의 養殖에 대한 口碑나 傳說中 重要한 것을 몇 가지 들어 우리들의 推定을 뒷받침해 보기로 하자. 「韓國水產誌」에 의하면, 「河東江口에 있어서의 海苔養殖業의 起源에 關해서는 確實한 記錄이 遺存하는 것이 없으며, 단지 古老의 口碑에 의하여 살펴 본건데 적어도 二百年(距今 260年前—引用者) 以前부터 인 것 같다」⁷³⁾고 하였으며, 「朝鮮之水產」第二號(1924年)에는 「只今으로부터 約三百年前 當時の 觀察使의 地方巡視時에 그 隨行員의 하나로 부터 葛島民이 그 養殖 및 製造方法을 傳授받은데서 始作하였다고 傳한다」⁷⁴⁾고 쓰고 있다. 한便 金善昂氏의 「海苔養殖論」(1953)에도 「只今으로부터 約三百年前(年代 未詳)인 仁祖時代에 全南 光陽郡 太仁島에서 一漁夫가 流木에 海苔가 附着漂流함을 보고 樹枝를 세워 海苔를 養殖하다가 그 後 山竹을 使用하여 養殖한 結果 그 成積이 매우 優秀하여 今日의 一本簇이 出現하였다고 함. 이것이 우리나라 海苔養殖의 始初인 것이다」⁷⁵⁾라고 하였으며 1925年 「朝鮮產業調查會」가 내놓은 「產業之朝鮮」은 全羅南道의 水產業을 論하는 자리에서 「在來의 養殖業은 오로지 海苔養殖뿐인데 約 300年前부터 創始되어 있었던 듯하다. 始政當時는 荒島, 光陽兩郡의 小島嶼에 局限되어 產額도 僅少한 것이었다」⁷⁶⁾고 하여 亦是 3百年 以前의 說을 支持하고 있다.

그러나 約百年前(距今 約 150年前) 說을 主張하는 이 또한 없지 않으니, 「朝鮮之水產」第一號(1924年)에는 光陽 郡의 海苔養殖의 起源에 關하여 「光陽郡 漁民이 傳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百餘年前 太仁島의 竹防簾에 附着한 海藻를 發見한데서 始作되어 그 後 諸種

73) 「韓國水產誌」, 第一輯, 319面 參고

74) 「朝鮮之水產」, 第二號, 57面 參고

75) 金善昂, 「海苔養殖論」, 1面 參고

76) 青柳南(朝鮮產業調查會), 「產業之朝鮮」 330面 參고

의 樹枝 또는 竹簍을 使用하여 養殖을 하게 되었다」⁷⁷⁾고 하였고, 1921年에 朝鮮總督府가 廉
찬한 「朝鮮의 水產業」에는 「朝鮮在來의 養殖業은 全羅南道 莞島 太仁島 및 慶尚南地 河東
의 海苔養殖場 뿐이었으며 口碑의 傳하는 바에 의하면 約百餘年前에 創始」⁷⁸⁾된 것이라고 한
다. 또한 1942년의 「朝鮮漁業組合要覽」의 莞島郡 海苔漁業組合의 沿革에는 「本組合에 있어
서의 海苔漁業의 起源은 今日로부터 約百三十餘年前 莞島郡 古今面 藏龍里에 居住하는 一
老漁民의 漁箭에 海苔가 附着하는 것을 發見하여 漁箭의 모양을 模倣하여 簍을 만들어 同里
竹島浦에 세운데서 始作된다. 이것이 곧 簍簍의 濫觴으로서 海苔의 附着成積이 良好한
것을 보고 部落民이 이를 模倣하는 者가 漸次 增加하게 되었다」⁷⁹⁾고 하여 亦是 百餘年前說
을 引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모두 韓國에 있어서의 海苔養殖의 起源보다도 莞島
에 있어서의 그 뜻을 얘기하고 있음을 볼 때 上記 慈珍강구에 있어서의 3百年前 起源說과
반드시 相衝된다고 보기 어려운다. 한편 1927年 朝鮮總督府에 의하여 調査 整理된 「朝鮮의
物產」에 의하면 李朝 初期의 物產中 「海衣」가 產出되는 府縣은 光陽縣을 비롯하여 寶城郡,
順天都護府, 興陽縣, 珍島郡, 康津縣, 海南縣, 長興都護部等⁸⁰⁾ 오늘날 養殖海苔의 產地가
거의 當라되고 있으며, 또한 鄭文基博士의 「朝鮮海苔」에 의하면 東國與地勝覽에는 全南
光陽郡에서는 海苔가 四百年前에 土產으로서 珍重視되어 온 記錄이 있는데 光陽郡에는 石苔가
皆無하는 事實을 들어 一本築建 養殖方法은 四百年 以前에 創始된 것 같이 思惟된다⁸¹⁾고 말
하고 있다. 以上을 綜合해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海苔의 養殖은 적어도 3百年 以上을
遡及 하는 째 历史를 지니고 있을 뿐아니라, 海苔는 极히 最近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의 가장 典型的이오 오히려 唯一한 養殖業이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면 海苔養殖業에 있어서의 入會制度 및 그에 基한 共同漁業制度는 어떻게 推轉되어
왔는지에 對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海苔를 包含하는 養殖業은 人類의 漁場開發의 第3段階
에 該當한다. 內水面이나 沿海浦岸에 있어서의 特殊의 養殖業의 展開는 山野의 入會關係
와 거의 다른 點이 없다. 그것은 마치 山野原地의 入會地 中에서 新田開發이 이루어져 耕
地으로 進展했음과 꼭 마찬가지로 지금껏 自然의 으로 生育繁茂하는 (共同)漁場가운데서 人
爲의 生育과 繁殖을 圖謀하므로써 마치 山野를 일구어 耕地으로 바꿈과 같이 養殖漁場에
로 進展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問題가 提起된다. 海苔養殖의 경우를 中心으로 얘기해 보자. 첫째로 岩壁
에 自然의 으로 生育繁茂하는 痘을 그저 採取해다가 부쳐 말리기만 하면 되는 石海苔의 경
우는 달리, 胚子가 附着해서 자랄 수 있게하는 施設, 即 建築과 같은 養殖施設의 必要한
바 여기에는 相當額의⁸²⁾ 資本의 投下를 所要로 한다. 둘째로 이와같은 施設은 한 漁村이 專
用하는 갯벌(浦岸) 全體를 하나로 包括하기에는 技術의 으로 下可能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個
別의 으로 施設하지 않을 수 없는 技術의 問題와, 세째로 그러면서도 이러한 施設은 어디
까지나 갯벌을 떠나서 架設 될 수는 없는데 그러한 갯벌은 마을의 總有下에 놓여 있다고 하
는 問題등이 그것이다.

77) 「朝鮮之水產」, 第一號 29面 참고

78) 朝鮮總督府, 「朝鮮の水產業」, 1921年, 26面 참고

79) 朝鮮漁業組合中央會編, 「朝鮮漁業組合要覽」 253

80) 朝鮮總督府, 「朝鮮의 物產」, 104~106面

81) 鄭文基, 「朝鮮海苔」「朝鮮之水產」, 第44號 所收, 31面 참고

82) 年平均 乾海苔 80束을 生產해 내는 一棚當 生產費는 11,135원으로 우리나라 海苔의 名產地 莞島郡
當局은 推算하고 있다. 莞島郡刊, 「水產現況」 1968, 參考.

앞의 두가지 條件으로 말미암아 海苔養殖業은 個別化의 方向으로 變質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세째 條件 即 海苔養殖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素인 漁場이 村落의 總有下에 놓여 있다고 하는 條件으로 말미암아 養殖漁業을 主로 하는 漁村에 있어서도 漁村共同體가 完全히 分解되지 못한채 그 本質은 簡直하면서 그 樣態만이 바꿔져가고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들은 아래 調查한 9個部落의 事例를 中心으로 이에 關하여 考察해 보기로 하자.

3. 入會制度의 弛緩

우리들이 調査對象으로 삼은 部落은 우리나라에서 海苔養殖의 主產地인 忠南과 全南의 9個部落을 任意抽出한 것으로서 忠南 保寧의 長古島, 同 瑞山의 大也島를 비롯하여 全南莞島의 何候部落, 美羅部落, 正道里 西部落, 三斗部落, 同高興郡의 竹島部落, 先昌部落등이다. 調査方法은 忠南의 二個部落은 調査紙의 郵送에 依한 他計調査에만 依存하였고, 全南의 各部落에는 調査紙의 郵送을 通해 먼저 基礎調査를 거친 後 筆者가 直接 夏季休暇를 利用하여 現地踏査를 行하므로써 그를 補完하였다.

다음 表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의 創立年代는 比較的 오랜 마을들이며 最古 800年前에서 240年前으로 邊及할 수 있는 古村들이다. 農漁兼營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沿岸漁家漁業의一般的經營形態이기 때문에 마을의 職業別 分布狀況을 確然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全南 莞島郡 正道里 西部落과 復興面의 경우를 除外한 大部分의 마을에선 主漁從農하거나, 忠南의 大也島와 全南의 竹島처럼 純粹한 漁村들로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漁村의 社會經濟的狀態를 살펴 보는데 큰 不足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便 大部分의 마을이 兼業이라곤 하지만 農業에 그들의 生計를 크게 依存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半漁半農의 漁村에 있어서 農業이나 他業이 漁業共同體의 存在樣式에 어떻게 作用하고 있는가 하는 面을 同時に 考察

<表14> 調査部落의 一般狀況

| 部落名 | 創立年代 | 職業別戶口 | | | 耕 地 面 積 | | | 人口 名 | 漁船保有 | | | 海苔養 殖面積 : m ² |
|-----------|------------|-------|-----|-------------|--------------|----------|----------|---------|-------|----------|----|--------------------------------|
| | | 漁業 | 農業 | 其他 | 畠 (坪) | 田 (坪) | 計 (坪) | | 動…船 | 無動 力船 | 計 | |
| 忠南 長古島 | 約 800年前 | 41 | 21 | 2 (34) | 64 (34) | 63,300 | 51,600 | 114,900 | 615 | 1 | 4 | 5 未詳 |
| 大也島 | 240 | 35 | 3 | 4 (24) | 42 (24) | 12,000 | 21,000 | 33,000 | 243 | — | — | 1,200 (700) |
| 全南 伺候 | 400 | 50 | 15 | — (50) | 65 (50) | 4,000 | 78,500 | 82,500 | 408 | — | 25 | 25 (425) |
| 美翻 | 450 | 46 | 15 | 7 (42) | 68 (42) | 46,562 | 89,521 | 136,083 | 510 | 1 | 17 | 18 (10) |
| 正道(西) | 800 | ※131 | 139 | 13 (131) | 152 (131) | 169,597 | 200,558 | 370,155 | 923 | 2 | 47 | 49 (260) |
| 復興 | 400 | ※138 | 140 | 6 (133) | 146 (133) | 64,953 | 171,426 | 236,379 | 850 | — | 38 | 38 (285) |
| 三斗 | 300 | 136 | 27 | 10 (130) | 173 (130) | 54,000 | 115,000 | 169,000 | 1,178 | — | 46 | 46 (1,602) |
| 竹島 | 300 | 31 | 4 | — (30) | 35 (30) | 1,650 | 18,750 | 20,400 | 145 | 9 | 21 | 30 (47) |
| 先昌 | 280 | 39 | 11 | — (39) | 50 (39) | 4,270 | 36,000 | 40,270 | 483 | 19 | 13 | 32 (10) |

註 ① 正道西部落 및 復興里의 戶口計가 맞지 않은 것은 農水產物이 比等하여 織業別 分類가 困難하여 重複된 것임.

② 戶口計의 ()은 1967年末 現在 漁村契加入戶數임. 海苔養殖場의 ()는 既開發地임.

資料：調查員이 現地踏査에서 얻은 資料 및 水協中央會「漁村契實態調查」1967 下卷

<表 15>

調査部落의 入會狀況

| 部落別 | 世帯數 | 入會漁家數 | 班數 | 漁村契加入戶數 | 非契員의 共同漁業參加與否 | 分家, 移入者의 入會 유예年數 | 分家, 移入者의 入會料 |
|------|-----|-------|----|-----------------|---------------|---------------------|---------------------------------|
| 長古 | 64 | 62 | 1 | 34 ^① | 參加치 않음 | 1 (3 年 年) | 없 (") 음 (") |
| 大也 | 42 | 38 | 1 | 24 | 上 同 | 即時 (3 년) | 없 (") 음 (") |
| 伺候 | 65 | 65 | 3 | 50 | 參 加 合 | 即時 (6 個 月) | 2,500원 (5,000원) |
| 美羅 | 68 | 61 | 4 | 42 | 上 同 | 即時 (6 個 月) | 若干 (額은未定) |
| 正道·西 | 152 | 139 | 8 | 131 | 上 同 | 即時 (6 個 月) | 上同 (") 同 (") |
| 復興 | 146 | 140 | 9 | 133 | 上 同 | 即時 (入住金完納者) | 上同 (") 同 (") |
| 三斗 | 173 | 163 | 11 | 130 | 上 同 | 即時 (6 個 月) | 上同 (") 同 (") |
| 竹島 | 35 | 35 | 4 | 30 | 上 同 | 當年 (移入當年) | 없 (") 음 (") |
| 先昌 | 50 | 50 | 1 | 39 | 上 同 | 1 (1年以上) | 없 (") 음 (") |

註 ① 漁村契加入戶數는 1967年 12月末 現在임. ② ()은 移入者임.

資料：本調查員의 實態調查에서 萬集作成한 것임.

할 수 있다는 點에서는 오히려 좋은 標本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를 標本部落의 海苔養殖을 中心으로 하는 入會制度에 關해서 考察해보자. 다음 表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調査部落은 모두 入會漁家와 全體戶口사이에 差異가 있다. 이는 部落居住의 모든 戶口가 漁業共同體에 加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第一節의 黑山島의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몇 가지 基本條件, 即 先代로부터 그 마을에 적어도 家塲 即宅地와 菜園을 包含하는 家屋을 지니고 살아오면서, 둘째 漁業에 從事해야 한다고 하는 條件을 갖춘 者만이 漁業共同體의 成員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分家者와 外地로부터의 移入者에 對해선 一定한 유예기간과 入會料를 두어 可能한限 경제한다고 하는 原則은 黑山島의 경우와 同一하나, (1) 그 期間이 거의 形式에 가까우리만큼 短縮되었거나 없어졌으며, (2) 入會料도 莊島의 一部漁村 以外에선 없어졌거나 받는다고 하드래도 入會後 앞으로 取得 할 수 있는 收益에 憲준다면 거의 形式에 不過하다고 하는 事實등을勘案해 볼 때 養殖漁業을 為主로 하는 漁村에 있어서는 共同體의 特質이라고도 할 수 있는 封鎖性이 크게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亦是 우리들이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은 現行 水產法에 의하여 設立된 漁村契는 當該部落을 完全히 包容하지 못하므로써 아직도 共同漁業의 實質上의 主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는 上揭 15表의 漁村契加入戶數가 入會漁家戶數에 未達하고 있으며 調査部落의 大部分이 非契員의 入會·共同漁業 參加를 許容하고 있는 點으로 미루어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울든 海苔養殖漁業을 主로 하는 漁業共同體는 그 本質이라 할 수 있는 封鎖性이 크게 弛緩되어 문을 열어 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入會制度의 殘影은 뚜렷 할 뿐 아니라 그러한 殘影은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立法上의 機構인 漁村契에 의해서 繼承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그것은 養殖漁業에서 가장 重要한 生產要素인 漁場이 村

落의 所有下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個別經營의 侵透

—共同經營의 變質—

以上과 같은 入會制度의 變質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共同經營形態에는 어떠한 變化를 가져오고 있는 것일까? 다음 表16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共同經營의 形態는 크게 分解되고 다만 그 殘影만을 남기고 있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눈에 띄우는 것은 海苔의 養殖과 採取가 個別的으로 營爲된다고 하는 點이다. 各成員은 海上 및 海上의 作業을 莫論하고 모든 作業이 個別的으로 營爲됨과 더불어 經營의 結果에 對해서도 當然히 各自가 責任을 진다고 하는 點이다. 即 各成員은 늦여름부터 새끼꼬기와 발만들기등 準備作業을 서서히 始作하여 10月初旬이 닥아오면 村會에 나가 等級別로 定해진 갯벌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自己建築地를 割當받은 後, 마을이 擇日한 日字에 一齊히 갯벌에 들어가 말뚝을 세우고 발을 치게 되는 것이다. 이때 開放된 별판에서 確實한 自己境界를 찾는다는 일은 어려우며 따라서 그 때문에 빛어지는 시비가 또한不少하다. 이러한 是非를豫防하기 위하여 村會는 建築과 採取에 比較的 強力한 規制, 이른바 「耕區強制」를 加하는 點이다. 그러나 그것이 他村落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耕區強制」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마을 間의 싸움으로 번져가는例도 드물지 않음은 우리들이 日刊紙의 報道에서 接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勞動은 自力이며 거기 所要되는 資金은 自費이다. 胞子가 附着하고 김이 자라면 다시 나가서 採取해 온다. 뜯어온 海苔는 짜고, 자르고, 췄고, 型을 트고, 발장에 부쳐 밀리는 一聯의 作業을 거쳐 우리들이 먹는 海苔가 製造된다. 이때의 勞動力은勿論 施設도 거의 個個人의 것이며 電力(夜間作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벽총이라도 自家電力を 많이 쓴다)과 같이 큰 施設만이 共有로 되어있다.

<表 16> 共 同 經 營 의 變 容

| 部落別 | 海苔共 同養殖 面積 (千m ²) | 持場의固 定化與否 | 共同經 營의弛 緩 | 個別經營의 成長 | | | 各己持場 의讓渡可 能性 | 耕區強制 性의有無 |
|-----------|--|------------------------|----------------------------------|-----------------------------------|--------------------------------------|---------------------------------|----------------------------------|------------------------------|
| | | | | 自己資本投 下의自由 | 勞動力의 任意雇傭 | | | |
| 忠南 長古島 | 未詳 | 等級定하여 매년季첨으 로割替함 | 個別建 築, 個自己能力 別採取 할 수 있다 | 割當된 갯벌에선 建築하기 를 고용할 수 있다 | 建築하 기 위해서 人力 있으나 을 고용할 수 있다 | 自他村에서 人人力 력으로 고용할 수 있다 | 相續은 할 수 있으나, 讓은 을 고용할 수 있다 | 建築採取日 期에 한정 된다는 것이다 |
| 大也島 | 1,200 (700) | 上 同 | 上同 | 上 同 | 上 同 | 上 同 | 上 同 | 上 同 |
| 全南 伺候 | 245 (245) | " | " | " | " | " | " | " |
| 美羅 | 60 (10) | " | " | " | " | " | " | " |
| 正道·西 | 760 (260) | " | " | " | " | " | " | " |
| 復興 | 355 (285) | " | " | " | " | " | " | " |
| 三斗 | 1,602 (1,602) | " | " | " | " | " | " | " |
| 竹島 | 47 (47) | " | " | " | " | " | " | " |
| 先昌 | 24 (12) | " | " | " | " | " | " | " |

註 ① ()은 既開發地임.

資料：水協中央會「漁村契實態調查」下卷 및 本調查委員의 調查表에서 作成

製造된 海苔는 大部分 漁組에 販賣를 委託한다. 그것은 生產의 零細性에서 오는 流通過程上의 被害를 막기 為한 措置이긴 하지만 그 自體가 共同(入會)漁業과 直接 關聯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結果는 모름지기 個個 成員이 責任을 지기 때문이다.

海苔養殖漁業에 있어서 共同經營의 弛緩相, 바꿔 말하면 個別經營의 成長의 모습은 各人은 割當된 个별의 範圍內에서는 自己能力껏 몇 떼든지 밭을 칠 수 있으며 거기에 所要되는 勞動力의 不足이 있는 경우에는 他地, 即 共同體 以外의 成員으로부터도 일손을 雇傭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事實에서 더욱 澄澈히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점은 黑山島의 미역 共同採藻漁業共同體에선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現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海苔의 養殖漁業에 있어서는 비록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漁村의 生產과 自治의 主體인 入會制度를 바탕으로 하여 養殖地의 「定期割替」와 自己持場의 未固定化, 그에 따른 自己持分의 讓渡不能 및 生產過程에 있어서의 「耕區強制」의 作用 등, 共同經營의 樣相이 低邊을 形成하고 있기는 하지만 生產 그 自體와 그 結果(損害와 利益)에 對해서 각자가 自己責任下에 營爲된다고 하는 點에서 個人經營의 形態로 漸次 轉換過程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海苔養殖業을 主로 하는 漁村에 있어서 이와같이 入會·共同漁業과 漁業共同體가 變質되어 가고 있는 原因은 무엇이며 反面에 以上과 같이 個別經營이 爽을 톤지 폐 오래됨에도 不拘하고 그 地盤위에서 땜들고 있는 理由는 또한 무엇일까? 이 點에 對해서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이미 本節의 序頭에서 얘기한바와 같이 지금껏 自然에 生育繁茂하는 魚介藻類를 採捕하면 漁場에서 漁業技術의 發達에 따라 養殖業이 擡頭한 것은 마치 自然에 자라고 있는 食物을 採拾하면 原野의 入會地에서 新田을 개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별씨 個別化의 爽이 明顯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더욱 海苔養殖의 경우에는 첫째로 다음 17表에서 보는 것처럼 生產에 相當額의 資本의 投下가 必要하고 一經濟的 理由, 둘째 生產

<表 17> 海苔養殖의 所要經費推計

單位: 一棚

| 項 目 | 金額(원) | 項 目 | 金額(원) |
|--------|-------|-----------|--------|
| 資 料 費 | | 되 | 25 |
| 항 목 | 2,080 | 틀 | 25 |
| 割 竹 | 825 | 절 단 기 | 1,000 |
| 丸 竹 | 600 | 기우(바구니) | 800 |
| 繩 | 1,000 | 결 속 판 | 20 |
| 人 夫 貨 | 300 | 름 | 50 |
| 建 漢 費 | | 帶 紙 | 360 |
| 人 夫 貨 | 600 | 賦 課 金 | 300 |
| 生 產 費 | | 經 費 計 | 11,135 |
| 採 取 船 | 3,000 | 收 入 額(棚當) | 20,000 |
| 발 장 | 150 | 收 益 | 8,865 |

資料: 莊島郡「水產現況」1968.

그自體가 技術的으로 個別化를 바탕으로—技術의 理由一하기 때문에 個別화의 素因이 꼬박이나 百合등과 같은 共同勞動을前提하는 養殖業의 경우보다는 잘開花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한다. 한便 이미 14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海苔養殖業은 淺海干瀉地에서 이루어지므로 落島보단 浦岸의 牛農牛漁의 沿岸漁村이다. 따라서 어떤 入會漁家라 하드려도 모두 그들의 生計의相當部分을 農業에 依存하고 있는바 農業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共同經營形態가 止揚되어 階層分化가 이미 비롯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農村의 入會制度도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農業에 있어서의 이와같은近代化一個別化的現象이 農業을 兼營하고 있는 漁民의 意識構造를 바꾸게 하고 나아가선 漁村의 社會經濟構造에도 波及하여 漁業共同體의 分解에作用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그러면 왜 이와같은個別化의 爵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個別化가 昇華하지 못하고 아직도 入會·共同漁業의 基盤위에서 맴돌고 있는가 하는 두번째 疑問에 對해서 答해 보기로 하자. 이에 關하여는 結言에서 우리나라의 漁業全般에 對하여論하는 자리에서 다시吟味해 보고자 하므로 여기에선 한마디로 答해 보기로 하겠다. 그것은 海苔養殖에 있어서 선近代의 網漁業—이를테면 定置網으로부터 流動의 纏着網漁業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生產에 經濟的要素(資本財와 勞動力)가 차지하는 比重보다도 自然的要素(漁場)의 그것이 크기때문에 資本制의漁業에 不適하며 또한 그러한漁場은 古來로 地先漁村의 總有로서 漁業技術의 發達에 따른 養殖漁業이 導入되기 以前에는 그러한漁場의 一偶에 섞여있는 石貝등에 附着한 海苔採取에 있어서도 入會漁業으로서 存立해 왔었다고 하는 歷史的背景에 基因한다. 그런데 漁村의 地先漁場專有라는 이러한 舊慣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近代의 網漁業法의 制定過程에 있어서도 繼續 墨守되어 왔었다고 하는데도 共同漁業溫存의 基盤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第四節 漁業共同體의 分解

——特種漁業(沿岸의 網漁業)의 경우——

우리들은 앞에서 漁業技術이 漁業共同體 및 그에 基한 入會漁業에 作用하는 方向은 두가지임을 言及한바 있거니와 그하나는 漁業技術의 發達이 漁業生產의 터, 곧 漁場을 萬人의自由에 맡기는 遠·近海에로 옮기는 경우요, 다른 하나는 排他獨占의 支配, 即 專用을 必須條件으로 하는 沿岸漁場에서 이루어진 境遇로서 漁業技術의 發達度가 資本集約의 方向으로 展開되어 그漁業의 營爲에 있어서 自然要素보다 經濟要素의 比重의 絶對的位置으로 옮겨 좋은漁業一例컨대 定置·船引網등의 沿岸의 網漁業—特種漁業에 있어서선, 資本集約의이라기 보단 勞動集約의이오 따라서 共同勞動과 漁場의 自然條件에支配됨이 큰 養殖漁業과는 달리 入會漁業이 일찍부터 解體되었다는 點도 아울러 言及한바 있다. 여기에선 定置·船引·地引網등 沿岸의 網漁業에 있어서선 왜 入會漁業이 分解되는 것이며 그過程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特種漁業의 概念規定으로부터始作해 보기로 하자. 特種漁業이란沿岸漁業中 入會漁業으로서 規律할 수 없는 漁業의 總稱으로서, (1)漁業期間中各自의 持場을 定하여 漁具를 敷設하는 漁業, (2)漁業을 行함에 있어서 多數人の 協力에 依하여 成立하는 漁業, (3)漁具漁船의 調達에 多額의 資本이 要하는 漁業등을 包括한다.⁸³⁾ 그러나 이

83) 原暉三, 「日本漁業權制歴史論」 82~83面 참고

중 우리들은 특히 定置·船引·地曳網漁業등 沿岸의 淺海를 漁場으로 하면서 洄遊性 魚類의 捕獲을 對象으로 하는 網漁業에만 論議를 局限키로 하겠거니와 이러한 漁業을 「特種漁業」이라 呼稱하는 것은 多少 낯설은 點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呼稱을 담습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漁業은 혹은 漁梁, 혹은 漁箭漁業으로서 일찍부터 우리 先人們에 依해서 마을의 總有漁場에서 操業하여 거기 參加한 漁業共同體의 全成員에게 共同分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特種漁業, 即 建網·合網·大敷網등의 定置網漁業은 더 말한 나위도 없고 船引網漁業이나 地引網漁業등은 한결같이 資本制 漁業에 附合되는 適性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特種漁業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自然에 生育繁茂하는 魚介藻類의 原始的인 採捕를 主軸으로 하는 入會漁業과는 달리, 첫째로 비록 沿岸이라고는 하지만 바다에 나가서 거친 波濤와 싸우면서 操業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參加할 수는 없고 굳은 腸力과 어느 程度의 熟練을 쌓은 壯丁이라야 하며, 둘째로 漁場에의 王幅과 操業에 漁船을 必須의 要件으로 하며, 셋째 洄遊하는 魚類를 捕獲하기 때문에 建網 혹은 投網해야 함으로 漁網이나 그밖의 漁具를 必要로 함은勿論이며 이러한 漁網등은 廣大한 海中에 敷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相當한 規模以上의 것이어야 하므로 莫大한 資本을 必要로 한다.⁸⁴⁾ 그러나 이와 같은 「共同漁業」은 共同漁業의 必要치 않는 原始的 漁染, 漁箭의 段階를 넘어서 그것을 必要의 要件으로 할 만큼 發展한 段階에 이르면 단순히 마을에 入戶하고 있다고 하는 條件만으로서 參加하는 入會漁業과는 달리 參加範圍가 스스로 制限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漁業技術의 發達이 이러한 特種漁業에 있어서의 建網과 漁船의 活用을 可能케 하는 段階에 이르면 별씨 漁村共同體의 「入會漁業」은 止揚되고 마을에서 所要資金을 捏出할 수 있는 몇몇 壯丁으로 構成되는 「漁村契」(혹은 組合)⁸⁵⁾를 主體로 하는 「共同漁業」으로 發展하는 것을 推斷하기에 어렵지 않다.

한便 이 時期엔 마을에는 별씨 階級性이 侵潤하여 分解의 싹이 트기 始作할 것이므로 資金捏出이 可能한 者와 不可能한 者의 差別이 나올 것이며 努力의 面에 있어서도 반드시 劃一의이 아니므로 自然 이러한 「共同漁業」에의 不參者가 發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共同漁業」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말미암아 항상 收奪의 對象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시달리게 된다. 그 하나는 그들의 漁場은 封建體制下의 王土思想에 基한 이른바 國有下에 놓여 있기 때문에 收租의 客體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위에 當時의 漁業技術의 發展段階로선 이러한 特種漁業이야말로 가장 發達된 形態의 漁業으로서 가장 高級 魚種을 捕獲하고 있는 탓으로 더욱 官僚機構에 依하여 重層的으로 收奪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李朝末의 漁場의 私占化 現象이 一層 현저해지고, 그에 따라 稅租가 強化됨에 따라 이번에는 稅租의 負擔이 權利의 表徵이 되며 權利의 存在는 稅租의 負擔에 依存 받게 된다. 여기에 차츰 個別化的 過程이 展開되기 始作하거나와 여기에 日帝가 들어와 그들의 「明治漁業法」을 母胎로 하는 이른바, 近代의in 漁業法을 制定하기에 이른다. 韓國最初의 近代의in 漁業法인 「舊韓國漁業法」⁸⁶⁾에 있어선 이러한 特種漁業을 「免許漁業」이라 하여 免許制度를 通해서 하나의 物權에 準하는 「漁業權」으로 法制화했음은 이미 言及한 바

84) 定置網中 큰 便에 속하는 大敷網의 建網費는 大體로 500萬원이 所要되며 적은 小臺網이라하드래도 300萬원은 所要된다고 한다.(全南道水產局生產課 참고).

85) 後述하는 바와 같이 「漁業契」, 「船員契」, 「漁網契」, 「33人契」등과 같이 漁村內部에서 村落과는 分離된 하나의 自助團體가 自生·發展한다.

86) 拙稿, 「韓國漁業의 資本制化 過程에 있어서의 沈滯性에 關한 研究」全南大論文集 第11輯, 129—132面 참고,

같다. 여기에 하나의 私權으로서 特種漁業은 完全히 「入會漁業」과 「共同漁業」의 範疇를 벗어난 資本制的⁸⁷⁾漁業으로 發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共同漁業」에 있어서는 漁村共同體와는 分離되고 있으나 아직도 길드의 「漁業契」를 主體로 하는 漁業共同體의 形態를 取한다고 하였거니와 資本制漁業으로 發展하는 過程에 있어서 그 主體的 推進者乃至 推進勢力은 누구일가? 이러한 推進者는 「特種漁業」에 所要로 하는 大量은 資本을 所有하여야 한다고 하는 點에서 大端히 重要한 問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萬一 韓國漁業이 그 資本制化 過程에 있어서 이론바 「아메리카型」, 즉 資本主義成立의 第一途, 곧 「밑으로부터의 資本主義에의 成長」의 길을 踏았다고 한다면 當然히 지금껏 「共同漁業」에 從事하던 生產者(漁民) 중에서 兩極分解가 이룩되고 그 結果 成功한 漁民의 手中에 資本의 原蓄이 이룩되어 그들에 依해서 資本制的漁業은 推進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韓國에 있어선 이와같은 中產的 生產者層의 兩極分解가 이루어지기 前에 日帝에 依하여 資本主義가 移植되었기 때문에, 即 「프러시아型」의 길을 踏았기 때문에 그後の 우리의 經濟發展이 歪曲되었음을 우리는 知悉하거니와, 우리나라의 漁業部門에 있어서는 더욱 이러한 歪曲相은 현저한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當面의 問題인 資本制漁業의 主體的 推進者的 問題에 있어서도 大部分, (1)日帝에 依하여 植民해온 日本漁民들, (2)이론바 官廳에 出入하는 漁村의 有志, (3)漁港에 도사린 客主, 高貸利商業資本家, (4)漁村出身의 漁業資本主, (5)漁業團體이 役員⁸⁸⁾ 등 實로 多樣스런 出身의 資本家의 손에 넘어 가므로써 새로이 登場하는 漁業, 혹은 漁業者와 在來의 漁民사이에는 斷層이 發生하여 在來의 漁民들은 兩極分解 以前의 漁家로 退化하여 다시금 그들의 共同의 穢場인 漁村共同體의 總有漁場에 共同寄生하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한便, 새로이 登場한 漁業經營者는 漁港이나 都市에 앉은체 前近代의 年雇漁業勞動者를 雇傭하여 漁業을 經營하는, 이론바 不在漁場主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다.

以上은 大體로 特種漁業에 있어서 入會·共同漁業의 解體와 資本制的漁業經營乃至 個別經營의 登場에 關한 理論的 補充이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와같은 理論을 뒷받침 할 史實을 몇 가지 살펴 보기로 하자.

特種漁業의 入會關係를 立證할 만한 文獻的 資料는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의 記錄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韓國水產誌」가 傳하는 바에 依하면 江原道 通川郡長箭에선 舉網 및 防簾漁業을 村落이 經營하고 있었던 모양이니 「港內에는 舉網 및 防簾을 定置한 것이 있다. 里人 共同으로 經營한다」⁸⁹⁾고 쓰고 있음을 보아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特種漁業에 있어서의 入會關係를 推斷케 하는 다른 하나의 事例는 作家 吳永壽氏의 小說 「갯마을」에 그려진 慶尙南道 東萊郡 日光面 一圓의 地曳網漁業의 村落共同體의 經營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이 入會制度를 바탕으로 하던 漁箭 漁梁등의 特種漁業은 漁業技術의 發達에 따른 資本集約의 生產手段의 導入과 더불어 마을에 움트기始作한 階級性에 발맞추어 漸次 「契」나 「組合」을 主體로 하는 共同漁業으로 變貌된다고 하였거니와 다음의 史實들이 그를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水產誌」第三輯은 忠南 庶仁郡 月下浦의 漁箭漁業의 共同經營

87) 이와같은 韓國資本主義의 日帝殖民者에 依한 移植說에 對해서는 近者 韓國의 小壯學者들에 依하여 조심스레이 批判되고 있으며 그 成果가 날로 억어감을 아나, 적어도 漁業部門에 있어서만은 通說은 無視할 수 없을 것 같다.

88) 高承濟, 「韓國經濟論」, 108面 참고

89) 「韓國水產誌」, 第2輯 48面 참고

形態에 對하여 「營業方法은 三人共同으로各自 資本金을 同等하게 각出하고 漁獲物도 平等하게 分配한다」⁹⁰⁾고 傳하고 있으며 또한 濟州道의 亂치 漁業에 있어서의 共同經營의 事例를 아래와 같이 傳하고 있다. 即 「揮羅網 및 防陣網은 一個人이 이를 經管하는 것은 극히 드물며 大概 모두가 數十人에 依하여 成立된 組合組織에 依하여 經營되는데 組合員은 大部分이 恒常 漁業에 從事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本漁業에 依하여 一時 關與하는데 不過하다. 組合은 아주 完備되어 組長과 副組長이 있으며 組長은 都家라고 하고 漁業에 關한 一切의 일을 處決한다. 都家 밑에는 所任이라고 하는 者가 있는데 이는 即 副組長으로서 恒常 都家를 補任하고 或은 都家의 意見를 組合에 傳達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 別途로 契長 및 公員이라는 者가 있으며 이는 마치 名譽組長 및 名譽 副組長과 같은 位置에 있는 者로서 組合員中의 古老를 指定하여 이를 위촉한다. 實제로 事務를 處理하는 일은 없고 다만 形式的인 相議에 關與할 뿐이다. 網地를 購入하고자 할 때는 都家는 所任을 通하여 組合員의 來集을 命하고 浮子(浮) 索繩 등 網을 製作하는데 要하는 物品을 각各 持參케 된다. 各者가 持參해야 할 物品의 數量은 미리 相議하여 定하여 둔다. 漁獲物은 都家의 指示에 따라 生鮮을 곧 組合員에게 等分하는 수도 있고 或은 生鮮 그대로 전조사켜 商人에게 賣渡하여 그所得을 組合員에게 等分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都家와 所任은 組合員으로서의 所得外에 一人半分을 取得하며 契長 및 公員은 無給이다. 一中略—漁業에 要하는 資本은前述한 바와 같이 大概 漁業者自身이 物品과 勞力 을 供給하기 때문에 實際 現金의 支出을 要하는 것은 網地와 漁船 뿐이다. 그리고 이 資本은 組合組織에 있어서는 組合員各者가 酒出하는 것인지만 萬若 現金이 不足 할 때는 다른 곳에서 借入하여 이를 支出한다」⁹¹⁾라고. 以上의 事例에서 알 수 있는바는, 첫째로 挥羅網이나 防陣網과 같은 網을 利用하는 亂치 잡이 漁業에 있어선 入會關係가 아닌 選擇된 사람끼리의 共同出資, 共同出役, 共同分配에 依한 組合(共同)經營이나 아직도 一人單獨經營은 出現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漁業技術에 熟練된 契長의 地位는 衰退하고 經營의 主導權이 資本과 經營에 有能한 새로운 實力者인 都家(組長)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 세째 組合員의 大部分이 恒常 漁業에 從事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本漁業에만 一時 關與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他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漁業에의 進出相이다.

우리들은 위에서 特種漁業에 있어서 일찍부터 入會關係가 解體되고 組合이나 契등의 共同經營으로 옮아 온 事例를 몇 가지 들었거니와, 이러한 關係를 구태여 史實에 依存할 것이 아니라 角度를 달리하여 오늘날 上記 特種漁業을 包含하는 우리나라의 網漁業의 貨金形態를 살펴 본다면 近代的 資本制漁業의 根源이 바로 共同出資, 共同出役, 共同分配를 經管의 核으로 하는 共同經營임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即 우리나라의 漁業貨金의 代表的 貨金形態는 이른바 「結負制」(갓가립制)인데 이는 「高麗中葉 以來 量地政策의 技術의 侧面으로서의 所謂 結負制度에서 由來된 것」⁹²⁾이다. 우리 말의 「갓가립制」란 「침」의 「口」이 「ㅅ」으로 變音한 것으로 침(負) 혹은 “물을 가린다”는 데서 緣由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나 와 本來 「負」나 「結」은 다같이 「土地面積의 單位인 同時に 租稅量의 單位」로서의 二重性格을 가진 禾穀의 收量名으로서 使用된 것이므로 이와같은 單位는 비단 農產物에만 局限되지 않

90) 「韓國水產誌」第3輯, 670面 參고

91) 「韓國水產誌」第3輯, 411~413面 參고

92) 張午鶴「韓國漁業에 있어서의 貨金制度의 考察—結負制를 中心으로—」(釜山水大研究報告書 2卷1號 所收) 參고.

고 國有를 原則으로 하는 漁場에 있어서의 漁獲物의 收租單位로서도 使用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하겠다.

아무튼 結負制는 近代的 賃金形態라 할 수 있는 固定給과는 달리 收益分配로서, 賃金이 經營에 被傭된 勞動者의 勞動給付에 對한 反對給付하기 보단 오히려 漁夫(勞動者)自身이 經營의 參與者라는 性格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는 것이라 解釋 할 때, 韓國漁業에 있어서의 付表의 賃金인 結負制 그 自體는 韓國漁業, 특히 上記 特種漁業이 共同出資·共同出役·共同分配를 核으로 하는 共同經營으로부터 出發했음을 反證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에는 이와같은 組合, 或은 共同經營으로부터 單獨經營으로 옮아가는 事例 몇가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上揭「韓國水產誌」에 依하면 멸치漁業에 있어서의 個人經營化의 現象을 아래와 같이 쓰고있다. 「一人 또는二人이 所有한 漁網에 있어서는 漁夫를 雇傭한다. 漁夫는 相互間에는 組長을 選出하여 萬事를 그 指揮下에 作業한다. 그리고 網主는 단지 漁獲物販賣를 掌握할 뿐이며 收獲 分配方法은 網主와 漁夫의 兩者間 折半하고 漁夫相互間에 있어서는 組合組織에 있어서와 같다.」⁹³⁾라고. 이 引用文을 吟味해 볼 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事實은 一人 或은 二人이 漁業의 經營主로서 登場하여 漁夫를 雇傭해서 漁業을 經營한다고 하는近代的 個人經營의 性格이 두들어지게 클로즈·엎되고 있다는 點이라 하겠다. 한便 이와같은 漁業經營의 推轉過程에 있어서 이미 外部의 他人資本이 浸透하고 있는 現象이 보여지는데 그러한 境遇에는 비록 多數人이 共同經營하는 境遇라 하드래도 信用있는 한 사람의 名義로 借用하므로써 거기에 個人經營의 爽이 發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韓末 日本에서 縱系制 網地가 輸入됨에 따라 小漁民과 勞動手段 製作과의 緊密한 結合이 弛緩되고 從來의 自家製漁網에 依한 自給이 購買로 代替됨으로서 小漁民이 거기에 必要한 貨幣를 客主나 高利貸資本家와 같은 外部로부터 마련케 되므로부터 漸次 뚜렷해 지는 것이었다. 葛生修亮의 「韓海通漁指針」에는 這間의 事情을 이렇게 傳하고 있다. 「漁業者는 그 地方의 住民으로서 或은 資本家一人의 所有인 것도 있으나 大部分은 村內의 住民이 서로 連合하여 그 中에서 信用있는 者를 推載하여 借主로 삼고 資本家와 特約下에 漁業者の 信用의 程度에 따라 網具 및 漁船을 抵當하고 資本金을 借入하여 營業에 從事한다.」⁹⁴⁾라고.

以上에서 우리들은 特種漁業의 入會制度→共同經營→資本利的 個人經營으로 라는 推轉過程을 說明할 만한 몇가지 事實을 들어 보았다. 그러면 特種漁業에 있어서의 入會關係의 解體에 關한 우리의 理論的 model의 後段, 即 資本制 漁業으로 發展시키는 主體의 推進者가 누구인가에 對하여 간단히 살펴 보고 本節을 맺기로 하겠다. 이에 關하여 高承濟博士는 「漁資本의 形態는 漸次로 複雜해져 가고 있다. 統管의 멸치漁業에 關해서만 보드래도 漁業村出身의 漁業資本主를 비롯하여 客主業者, 高利商業資本家, 漁業團體의 役員, 漁場地方의 銀行家등의 五種形態를 해아릴 수 있다」⁹⁵⁾고 하거니와 우리들은 여기에 日本으로부터의 移住漁民들을 침가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事實은 開港 以前의 半漁半賊인 韓海通漁는 莫說하드래도 開港 直後 1890年代에 釜山港 總領事를 通하여 漁業免許를交付받은 件數가 年平均 650餘件에 達하고 있으며⁹⁶⁾, 그 結果 1894年을 100으로 한 日人の 韓海 漁獲高의 伸長은 合併 當年인 1910年에는 159.7로서 1/2倍나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1906년 統監府가 設置된 뒤부터는 日本政府에 依하여 漁業免許를 包含하는 諸般 物權을 保

93) 「韓國水產誌」, 第3輯 413面 參考

94) 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439面 參考

95) 高承濟, 「上揭書」 107~108面 參考

96) 岡澤清明, 竹中邦香編, 「朝鮮通漁事情」 105~108面 參考

障고 漁民의 團體的 移住를 積極 장려하였던 것이니 1908年, 1909年, 1910年, 3年間에 各各 調査한 移住漁民의 數는 1,146戶에 4820名⁹⁷⁾을 索아릴 수 있음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한便 우리 韓國人에 依한 境遇라 하드래도 漁業內部에서 原蓄過程을 通해 밑으로부터 成長한 漁民出身의 손으로 資本制的 漁業을 推進한 事例보다도 거의 大部分이 漁村呂의 資本이 主動的 구실을 다 해왔다고 말 할 수 있는바, 그것은 1962年 現在 定置網漁業權의 4/5가 貸貸되고 있다⁹⁸⁾는 하나의 事實만 하드래도 立證되고 남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된 까닭은 무엇일가? 무엇보다도 重要한 理由는 韓國漁業에 있어서 自生의 兩極分解를 이루하지 못하므로써 資本制漁業의 成立과 發展을 自身의 宿命으로 받아들일 만한 資本家가 차라지 못했었다고 하는 點, 바꿔 말하면 漁業發展의 停滯性이 그 하나요, 둘째로는 近代的 漁業法이 要求하는 漁業權의 免許制度가 近代의 法律生活에 無知한 辟村의 漁民들로 하여금 疏外와 排除를甘受치 않을 수 없게했다고 하는 點등이 아닌가 생각한다. 要컨데 定置·船引·地引網 등 沿岸를 漁場으로 하는 特種漁業의 資本制化 過程은 外部勢力에 依한 地先漁民으로부터의 企業漁業에의 길을 收奪하는 過程이라 말할 수 있거니와 沿岸漁民이 上昇함에 있어서 지렛대의 구실을 할 수 있는 上記 特種漁業의 資本制化 過程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歪曲相은 韓國漁業과 漁村의 沈滯性을 永久化한 動因으로서 오늘날 韓國漁村이 漁港으로, 우리의 漁家漁民이 漁企業家으로近代化的推轉을 겪지 못하고, 漁村契를 中心으로 하는 前近代的 經管形態에 매몰하고 있음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起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第二章 漁業共同體의 現存樣態

——漁村契의 實態와 機能——

第一節 漁村契의 實態

第一章에서 우리들은 漁業共同體는 우리 先人이 韓海를 開發한 當初부터 漁業經營의 主體로서 存立하여 왔었거니와 그것이 時間의 흐름, 即 漁村과 漁業의 內外에 發生하는 社會的·經濟的·或은 技術的 諸條件의 變化에 따라 어떻게 發展·展開되어 왔는가에 對하여 考察해 왔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韓國漁業이 그近代化에로의 變革期, 即 資本制漁業의 成立過程에 있어서 漁業의 内部에서 그것도 밑으로부터의 成長과 分解라는 原蓄過程을 겪어 이른바 「아메리카型」의 길에 따라 自生의 으로 發展하지 못하고, 外部로부터 資本制化에 適合한 몇몇 漁業만을 골라 資本制漁業의 力을 염두에 놓았기 때문에 漁業의 經營構造는 重層의이며 多元化되어 피라밀의 頂上에는 국해 發達된 少數의 大規模 資本制漁業이 옹립하고 있는가 하면, 底邊에는 수많은 零細의 漁家漁業이 깔려 있음도 또한 보아온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零細의 漁家漁業은 不得已 그들의 生計의 터를 古來의 地先專用漁場에 求하지 않을 수 없는 뻬한 實情에 놓이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에 民主的의 水產業法의 制定을 目的으로 하는 現行 水產法은 그러한 地先總有漁場의 專用權을 地先漁村에 주고 그

97) 山中精編, 「朝鮮產業誌」中卷, 158~162面 및 朴九秉, 「韓國水產業史」317~318面 參考

98) 權尚遠, 「漁業權의 法的性格에 關註 小考」(釜山水產大學, 「水產大學研究報告」第4卷1.2號所收) 참 고

것을行使하기爲한主體로서「漁村契」라는共同體의後身을法人化하여 거기에賦與하지않을수없었던것임은이미言及한바있다.本章에선이와같은事由로말미암아1962年에制定된現行水產業協同組合法第16條2項에依하여設立되어古來의漁業共同體의遺制를그대로물려받어간직한채다른한便에있어서는資本主義經濟體制下의小商品生產者의市場機構에對한自己適應運動의一形態로서새로이登場한協業化(共同化)의基礎單位로서그구실이漸次커져가고있는漁村契의實態와機能을分析해보고자한다.

1. 漁村契의 分布狀態

그러면오늘날바다를안고있는沿岸自然部落에있어서의漁村契의組織狀況과그分布狀況은어떠한가?먼저이問題에對해서살펴보기로하자.다음表18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1966年末現在全國의漁村契總數는2,105個이며그것이包容하고있는沿岸의natural部落數는3,111個部落으로서地區別漁業協同組合管內에散在해있는總4,622個部落의72%를차지하고있는셈이다.⁹⁹⁾한便漁村契에加入된契員數는128,216名으로서一漁家當一契員主義를擇하고있으므로管內漁家總戶數195,686戶에대한66%의加入率을나타내고있으며,이를全國水產戶口에견준다면同年全水產戶口245,738戶에對한約53%를차지하고있다.한便水產製造業을除外한狹義의水產業戶口에比한다면그55%를占하고있는셈이다.

<表18> 漁村契의組織狀況

| 支 部 別 | 漁 村 契 數 | 漁村契에包 含된部落數 | 漁村契員數 (A) | 漁 家 戶 數 (B) | 加入比 (A/B)% |
|-------|---------|----------------|--------------|----------------|---------------|
| 京畿道 | 130 | 262 | 8,189 | 11,508 | 71 |
| 忠南 | 161 | 272 | 6,775 | 11,323 | 60 |
| 全北 | 49 | 144 | 1,741 | 7,862 | 22 |
| 全西 | 487 | 628 | 25,725 | 33,475 | 77 |
| 全東 | 473 | 626 | 27,079 | 35,570 | 76 |
| 慶南 | 450 | 749 | 24,306 | 40,850 | 60 |
| 慶北 | 169 | 218 | 13,525 | 20,177 | 67 |
| 江原道 | 87 | 92 | 8,521 | 16,985 | 50 |
| 濟州 | 99 | 120 | 12,355 | 17,938 | 64 |
| 合計 | 2,105 | 3,111 | 128,216 | 195,686 | 66 |

資料：水協中央會「漁村契實態調査」1967. 上卷

이제이를水產協同組合各支部別分布狀況을살펴본다면,漁村契數에있어서는全南西區支部管下가487個로가장많고,全南東區支部가473個로次位,慶南의450個가3位임에反하여,契員數에있어서는全南東區支部의27,079名이首位,25,725名을지니고있는全西支部가第2位,24,306名을包容하고있는慶南이第3位인데,反하여加入率에있어서는77%,76%로써全西全東이各各1,2位를占하고있으며京畿道가71%로써第3位를차지하고있다.他便加入率이가장低調한支部는22%밖에包容하지못하고있는全北으로서漁村契數(49部落)에있어서나契員數(1,741名)에있어서共히全國最下位를占하고있다.全南의東西兩支部가이와같이높은組織率을보이고있는것은全南은多島海를옹

99) 水協中央會, 「漁村契實態調査」上卷 7面 參考

<表 19> 漁村契의 組織狀況推移

| 區 支 部 | 1962(A) | | 1963 | 1964 | 1965 | 1966(B) | | 伸長率(A/B)% | |
|-------------|---------|--------|---------|---------|---------|---------|---------|-----------|-----|
| | 契 | 契員數 | 契員 | 契員 | 契員 | 契 | 契員數 | 契 | 契員 |
| 京畿 | | 4,390 | 5,170 | 5,835 | 6,621 | 130 | 8,189 | | 187 |
| 忠南 | | 4,343 | 5,271 | 5,692 | 6,251 | 161 | 6,775 | | 156 |
| 全北 | | 1,120 | 1,241 | 1,396 | 1,580 | 49 | 1,741 | | 155 |
| 全西 | | 18,423 | 19,537 | 21,243 | 23,364 | 487 | 25,725 | | 140 |
| 全東 | | 20,426 | 19,940 | 22,992 | 4,871 | 473 | 27,079 | | 133 |
| 慶南 | | 17,907 | 20,409 | 22,750 | 22,610 | 450 | 24,306 | | 136 |
| 慶北 | | 10,640 | 11,528 | 11,858 | 12,810 | 169 | 13,525 | | 127 |
| 江源 | | 5,953 | 6,367 | 6,893 | 7,418 | 87 | 8,521 | | 143 |
| 濟州 | | 9,164 | 10,852 | 11,459 | 12,021 | 99 | 12,355 | | 135 |
| 合計 | | 92,366 | 100,315 | 109,118 | 117,546 | 2,105 | 128,236 | | 139 |

資料：水產協同中央會「漁村契實態調查」1967. 上卷

유하여 海岸線의 길이(全國海岸線의 36.9%를 占하고 있다) 沿岸漁村數가 많을 뿐만 아니라 淺海干瀉地가 많아 共同稼場이 될 수 있는 總有漁場이 많으며 同時に 全南 水產業의 漁業勢力構造가 가장 落後性을 띠우고 있다¹⁰⁰⁾고 하는 事實의反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上과 같은 漁村契의 組織狀況의 推移는 어떠한가. 1962年 法令의 公布以來 66年末에 이르기까지 其間의 動態를 살펴본다면 다음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年間에 契員數에 있어서는 當初 92,366名으로부터 66年末 現在 128,216名으로 39%가 伸長하고 있다. 支部로 본다면 그간의 伸長率이 가장 큰 곳은 京畿支部의 87%이며 가장 낮은 곳은 慶尚北道의 27%이다. 이와같이 漁村契는 時間의 흐름에 따라서 비록 漸進的이기는 하지만 날로 伸長一路에 있거니와 이러한 現象은 다음 節의 漁村契의 經濟活動狀況에도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하겠다.

2. 契員의 經營形態別 構成

以上과 같이 全國水產戶口의 53%를 占하고 있는 漁村契員의 經營狀況은 어떠할가. 다음 表19은 이를 말해주는 契員의 漁業別 從事狀況을 나타내고 있다. 그에 依하면 契員의 約半(62.5%)은 漁撈漁業에 從事하고 있으며 37.3%에 該當하는 47,574名은 養殖業에, 남어지 0.2%에 不過한 276家口가 水產製造業에 從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表를 皮相的으로 考察한다면 漁撈漁業에 從事하는 契員이 62.5%를 占하고 있다는 事實은 제법 契員의 從事漁業의 近代的인 裝備를 갖춘 漁船漁業처럼 생각하기 쉬운 感이 없으나, 이미 우리들이 第一章에서 살펴 본바 있으며 또한 다음 表22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大部分은 原始的인 漁法에 依한 採藻捕貝임을 看過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即 契員이 從事하고 있는 漁撈業의 內容을 分析해 보면 機船底引網이나 鮫鱗網 및 流刺網과 같이 比較的 發達된 漁法에 依한 漁業에 從事하고 있는 契員은 각각 1.1%, 3.9%, 15.6%로서 合計 20.6%에 不過한 機船底引網이나 鮫鱗網漁業 從事者は 本來 業種別組合에 따로이 加入되었음을 着過해서는 아니된다—反面에 裸潛이나 一本釣 및 其他 採藻業등에 從事하고 있는 數가 58.7%를 占하

100) 抽稿「全南地方水產業의 構造分析과 그 開發方向」(全南大學校刊「湖南經濟研究」第1輯所收) 31面 참고

<表 20>

契員의漁業別從事狀況

1966.

| 支 部 別 | 合 計(A) 名 | 漁 撈 業 (B) | B/A (%) | 養 殖 業 (C) | C/A (%) | 製 造 業 (D) | D/A (%) |
|-------------|----------------|--------------------|------------|--------------------|------------|--------------------|------------|
| 京 畿 | 8,189 | 3,886 | 47.5 | 4,284 | 25.3 | 19 | 0.2 |
| 忠 南 | 6,775 | 3,555 | 52.5 | 3,220 | 47.5 | — | — |
| 全 北 | 1,741 | 1,462 | 84.0 | 231 | 13.2 | 48 | 2.8 |
| 全 西 | 25,725 | 7,721 | 30.0 | 17,890 | 69.5 | 114 | 0.5 |
| 全 東 | 27,079 | 9,723 | 35.9 | 17,309 | 63.9 | 47 | 0.2 |
| 慶 南 | 24,306 | 19,450 | 80.0 | 4,825 | 19.9 | 31 | 0.1 |
| 慶 北 | 13,525 | 13,514 | 99.9 | — | — | 11 | 0.1 |
| 江 原 | 8,521 | 8,510 | 99.9 | 5 | 0.05 | 6 | 0.05 |
| 濟 州 | 12,355 | 12,355 | 100.0 | — | — | — | — |
| 合 計 | 128,216 | 80,176 | 62.5 | 47,764 | 37.3 | 276 | — |

資料：水協中央會「漁村契實態調查」1967. 上卷(20面)

<表 21>

契員의漁撈業從事狀況

1966.

| 支 部 別 | 鯵 鱸 網 | 流 刺 網 | 機 底 網 | 打 瀨 網 | 一本 釣 | 延 繩 | 定 置 網 | 裸 潛 | 其 他 | 計 |
|-------------|-------------|-------------|-------------|-------------|---------|--------|-------------|--------|--------|--------|
| 京 畿 | 473 | 808 | 34 | 1 | 61 | 364 | 81 | 18 | 1,580 | 3,420 |
| 忠 南 | 608 | 985 | 81 | 42 | 370 | 751 | 203 | 16 | 624 | 3,680 |
| 全 北 | 514 | 162 | 13 | — | 123 | 360 | 6 | — | 362 | 1,540 |
| 全 西 | 386 | 1,662 | 51 | 1 | 1,234 | 1,998 | 460 | 289 | 2,035 | 8,116 |
| 全 東 | 867 | 1,123 | 191 | 156 | 2,921 | 2,528 | 879 | 201 | 2,195 | 11,061 |
| 慶 南 | 108 | 1,791 | 210 | 259 | 4,902 | 4,586 | 681 | 997 | 5,777 | 19,311 |
| 慶 北 | 139 | 2,875 | 277 | 8 | 7,055 | 742 | 339 | 356 | 1,723 | 13,514 |
| 江 原 | 51 | 2,706 | 5 | — | 2,912 | 1,368 | 16 | 10 | 1,012 | 8,080 |
| 濟 州 | 24 | 515 | — | 3 | 1,523 | 938 | 6 | 8,693 | 645 | 12,347 |
| 合 計 | 3,170 | 12,627 | 862 | 470 | 21,101 | 13,635 | 2,671 | 10,580 | 15,958 | 81,069 |

資料：水協中協會「漁村契實態調查」1967. 上卷 25面

<表 22>

契員의經營形態別構成

1966.

| 支 部 別 | 合 計 (A) | 專 業 (B) | 比 率 B/A | ： ： (C) | 比 率 C/A | 被 傭 (D) | 比 率 D/A |
|-------------|---------------|---------------|---------------|---------------|---------------|---------------|---------------|
| 京 畿 | 8,189 | 3,106 | 37.9 | 3,388 | 41.3 | 1,695 | 20.8 |
| 忠 南 | 6,775 | 3,070 | 45.3 | 3,145 | 46.4 | 560 | 8.3 |
| 全 北 | 1,741 | 1,043 | 59.9 | 305 | 17.5 | 393 | 22.6 |
| 全 西 | 25,125 | 7,935 | 30.8 | 16,821 | 65.4 | 969 | 3.8 |
| 全 東 | 27,079 | 5,701 | 21.1 | 19,413 | 71.7 | 1,965 | 7.2 |
| 慶 南 | 24,306 | 8,571 | 35.3 | 11,011 | 45.3 | 4,734 | 19.4 |
| 慶 北 | 13,525 | 5,468 | 40.4 | 5,026 | 37.2 | 3,031 | 22.4 |
| 江 原 | 8,521 | 5,520 | 64.8 | 2,180 | 25.6 | 821 | 9.6 |
| 濟 州 | 12,355 | 1,914 | 15.5 | 10,378 | 84.0 | 63 | 0.5 |
| 合 計 | 128,216 | 42,328 | 33.0 | 71,657 | 55.9 | 14,231 | 11.1 |

資料：水協中協會「漁村契實態調查」1967. 上卷 22面

고 있음을 볼때·쉽게 立證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따지고 볼 때 漁村契員의 대반은 沿岸의 收益性이 낮은 養殖業이나 原始的인 漁撈業에 從事하고 있으며 이들의 生計의 터전은 오로지 地先의 總有漁場임을 다시한번 實感 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事實은 다음 表22이 나타내고 있는 經營形態別 構成에서 더욱 잘 알 수 있다. 이제 經營形態別 契員의 構成을 살펴 본건데, 專業契員은 33%인 42,328名임에 反하여 兼業契員은 55.9%에相當하는 71,657名에 達하고 있으며, 被傭者는 11.1%에相當하는 14,231名이다. 兼業契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많은 契員이 半漁半農의 沿岸民으로서 水產業以外의 其他 職業에서 生計의 不足分을 補完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韓國水產業의 經營과 階層構造의 複雜性을 加一層 짙게 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地域別로 잠깐 알아 본다면 專業契員이 가장 많은 곳은 江原道의 64.8%와 全北의 59.9%임에 反해서 가장 낮은 곳은 15.5%인 濟州道이다. 이에 對하여 兼業契員이 50%를 넘는 곳은 濟州 및 全南道 一圓으로서 이 地域에 있어서의 水產業이 後進性과 漁民의 零細性을 表現하고 있다 하겠다. 끝으로 우리들이 注意하지 않으면 아니될 事實은 被傭者の 比率이 높은 곳은 全北과 慶北등지인 바 이러한 곳은 大體로 專業化의 傾向이 뚜렷한 곳이었다는 點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 地域에선 漁村에 있어서의 兩極分解의 現象이 커져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겠다.

以上에서 우리들은 1966年末 現在의 全國의 漁村契의 組織 및 分布狀況과 그 推移 그리고 오늘날 그들이 從事하고 있는 漁業의 種類와 形態를 概觀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는 事實은, 1962年 새로운 水產業協同組合法 施行以來 漁村契가 沿岸漁村의 總有漁場에 對한 合法의 權利의 主體로서 漸次 增加一路에 있으며, 둘째로 그들이 從事하는 漁業이나 經營形態가 아직도 資本主義의 市場機構에 適應하기에는 不適한 原始의이或零細한 것이므로 逆說의이기는 하지만 協業化乃至 共同化의 基本單位로서의 漁村契의 存立意義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第二節 漁村契의 機能

漁村契는 具體的으로 어떠한 구실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漁村社會에 미치는 영향은 뿌리스의인가, 不然이면 오히려 마이너스의인面이 더 많은가? 하는 問題들이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다루어 보아야 할 課題이다. 漁村契를 近代法에 依해서 適法化된 古來의 漁業共同體의 後身이라 한다면 그것이 하는 구실 또한 多方面에 걸친 多樣스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周知하는바와 같이 共同體는 그 自體가 이른바 하나의 小宇宙로서自己完了의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機能도 政治(自治), 經濟, 社會, 文化, 親睦, 宗教, 諸般에 걸쳐 있지마는 本節에선 그 基本的인 구실이라 할 수 있는 經濟的 機能을 中心으로 分析하되 社會·文化的機能도 아울러 살펴 보고자 한다.

1. 漁村契의 經濟的 機能

「漁村契」가 하는 가장 基本的이或主된 구실은 經濟的 機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在來로 「漁村契」는 地緣을 媒介로 하는 零細漁民들의 經濟的 自助團體이기 때문이다.

經濟是 生活資料의 生產에서 消費에 이르는 社會的 秩序라 規定한다면 「漁村契」가 行하는 經濟的 機能도 自然히 生產의인 機能과 消費에 이르는 流通過程에서 行하는 구실로 大

別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漁村契」의 機能이 具體的으로 나타나는 것은 生產의 側面이라 하겠다. 이러한 事實은 現行法이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는 「漁村契」의 事業에도 잘나타나 있다. 即 水產業協同組合法 施行令에 依하면 「漁村契」는 契의 目的을 達成하기 為하여 (1)漁業權의 取得과 開發 (2)所屬地區別 組合 所有의 共同漁場 및 養殖漁場의 專用 (3)漁民의 生活必需品과 漁船・漁具의 共同購買 (4)漁村의 共同施設 (5)水產物의 共同製造 및 共同購買 (6)漁業資金의 幹旋 및 配定 (7)其他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을 行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生產過程의 機能을 中心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生產過程에 있어서 「漁村契」가 行하는 구실은 生產手段의 共同取得(購入)과 開發, 共同利用, 共同作業, 共同經營等의 形態로 나타난다. 첫째로 生產手段의 共同取得과 開發은 (1)沿岸漁業生產에 있어서 基本的 自然要素인 漁場의 專用權의 獲得이며 (2)漁船 및 漁具의 共同購入과 漁業施設의 共同附設 (3)營漁資金의 幹旋등이며, 둘째로 共同作業은 共同稼場인 漁場에 있어서의 共同採藻・共同捕具・共同磯洗・共同養殖등 實로 多樣스럽다. 以下 이러한 順序에 따라 하나 하나 分析해 보기로 하자.

漁業生產에 있어서 漁場이 차지하는 重要性은 이미 누차 言及한바 있거니와 漁業生產이 原始產業이기 때문에 그 重要性은 文字 그대로 絶對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自然에 그대로 生育繁茂하는 魚介藻類의 採捕나 濱海干瀉地에 있어서 養殖業의 經營과 같은 原始的인 沿岸漁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感이 없지 않는 것이다. 이와같이 重要한 漁場의 支配와 收益, 即 專用權은 在來에는 入會關係에 基한 共同體에 依해서 亨有되어 왔었음은 第一章에서 길게 다루어 왔거니와 오늘날에 있어서는 事實上의 漁村共同體의 後身이라 할 수 있는 漁村契가 行使하고 있음은, 漁村契가 行하는 經濟的 機能中에서도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漁村契가 實體적으로 行使하는 漁業權은 어찌할까? 全國的인 統計는 利用할 소 없어 유감스러우나 先 全南道의 境遇를 例로 들어 본다면 다음과 表23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1965年 5月末 現在 有効한 全南道內의 總漁業權의 1,563件의 77%인 1,196件이 漁業組合의 所有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水產業法 第51條 및 同10條에 依하여 그대로 漁村契가 行使하고 있는 것이다. 그內容을 具體的으로 分析해 본다면 共同漁業에 있어서는 757件 100%가 各地區 漁業協同組合→漁村契가 所有하고 있으며, 養殖漁業에 있어서는 550件 중 그 60%에 該當하는 327件이 漁組→「漁村契」의 所有, 그리고 沿岸의 代表的 資本制漁業이라 할 수 있는 定置網漁業에 있어서는 256件 중 12件만이 漁組→漁村契의 所有로 되어 있다. 漁村契가 行使하고 있는 1,196件의 漁業權은 全南道內에 組織되어 있는 「漁村契」 821個(1966年 2月末 現在)에 對한 1.5倍에相當하는 것으로서, 바꿔 말하면 이는 「漁村契」當 平均 1.5件의 漁業權을 亨有하고 있다는 事實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傾向은 全國的인 추세라 할 수 있으니, 即 1966年 2月 漁組가 가지고 있는 漁業權 總保有件數는 2,832件으로 이를 當時의 漁村契數 2,061個所로¹⁰¹⁾ 算術平均해 볼 때 契當 1.4件의 漁業權을 保有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漁村契는 적어도 그것이 絶 바탕이 되는 漁場의 支配라는 點에서는 名實 共히 韓國 沿岸漁業의 主宗을 이루는 經營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漁業施設의 共同施設이라는 點에서 「漁村契」의 機能을 살펴 보기로 하자. 「漁村契」가 中心이 되어 共同으로 敷設한 共同漁業施設의 内容은 船着場, 漁船待避所, 防波堤, 氣象信號臺, 給水施設, 給油施設, 販賣場, 共同倉庫, 事務室, 마을文庫등 漁業生產에 있어

101) 水協中央會會, 「組合員實態調查」「業務資料」第7輯, 17面 및 30面 參照

<表 23>

全南地方의 漁業權 및 그 所有狀況

1965. 5. 31 現在有效

| 市郡名 | 組合名 | 共同漁業 | | | 養殖漁業 | 定置漁業 |
|-----|-----|------|-----|-----|----------|---------|
| | | 第一種 | 第二種 | 第三種 | | |
| 여수 | 여수 | 16 | | 5 | 14(3) | 25(1) |
| | 돌산 | 13 | | 10 | 7(6) | 43 |
| 여천 | 안도 | 24 | 12 | 14 | 15(15) | 26(3) |
| | 우정 | 13 | 1 | 21 | 23(22) | 21 |
| 광양 | 거문 | 23 | 6 | 15 | | 1 |
| | 광양 | | | 4 | 40(33) | 13 |
| 보성 | 별고 | | | 6 | 20(21) | |
| | 나로 | 16 | | 12 | 20(19) | 3 |
| 고흥 | 도창 | | | 5 | 41(23) | 1 |
| | 해동 | 20 | | 4 | 27(27) | |
| 장흥 | 금화 | 2 | | 7 | 42(38) | 28 |
| | 금동 | 14 | | 6 | 27(27) | |
| 목포 | 장관 | 4 | | 7 | 31(18) | |
| | 목포 | | | 2 | 26 | 7 |
| 무안 | 목안 | | | 2 | 53(6) | (7) |
| | 목혹 | 34 | 11 | 16 | | |
| 해남 | 송지 | 9 | | 4 | 16(16) | |
| | 우수 | | | 5 | 12(7) | |
| 완도 | 북평 | 3 | | 3 | 21(13) | |
| | 완도 | 41 | 4 | 26 | 16 | 8 |
| 장진 | 신일 | 49 | | 15 | 17 | 6 |
| | 금당 | 11 | | 8 | 17(11) | 18 |
| 진도 | 군의 | 17 | | 9 | 13(1) | |
| | 고금 | 23 | | 13 | 47(1) | 1 |
| 영광 | 약산 | 37 | 1 | 29 | (1) | 5 |
| | 노화 | | | 28 | 22(1) | |
| 계 | 장진 | 1 | | 4 | 9(9) | 8 |
| | 진도 | 24 | | 12 | 6 | 19 |
| | 영광 | 54 | | 11 | 4 | 1 |
| | | | | 1 | 2 | |
| | | 448 | 35 | 274 | 550(327) | 256(12) |

資料：① 全羅南道 水產課

② 共同漁業權은 全體, 養殖漁業權 및 定置漁業權은 ()數字가 各各 漁組所有임.

서 直接 或은 間接으로 利用되는 施設등이다. 이제 1966年末 現在「漁村契」의 共同漁業施設을 보면 다음 表24와 같거니와 船着場은 955個所로 全國「漁村契」의 45%에 不過한 것으로서 이는 全國漁村契中 1,150個의 곳엔 아직 이렇다 할 施設을 갖춘 船着場이 없거나 他

<表 24>

漁村契의 共同漁業施設

| 支 部 別 | 區 別 | 船着場 | 漁船待避所 | 防波堤 | 氣象信號臺 | 給水施設 | 給油施設 | 事務室 | 販賣場 | 共同倉庫 | 마을文庫 |
|-------------|--------|-----|-------|-----|-------|------|------|-----|-----|------|--------|
| | (개) | (m) | (개) | (m) | (개) | (개) | (개) | (개) | (개) | (個所) | (部數) |
| 京畿 | 22 | 2 | 38 | 9 | 1 | 2 | 16 | 1 | 15 | 45 | 1,978 |
| 忠南 | 33 | 22 | 17 | 10 | 2 | 2 | 7 | 2 | 10 | 24 | 1,482 |
| 全北 | 12 | 1 | 11 | 5 | 2 | 3 | 2 | 2 | 1 | 16 | 1,091 |
| 全西 | 200 | 15 | 51 | 9 | 12 | 2 | 287 | 14 | 85 | 98 | 10,260 |
| 全東 | 204 | 20 | 59 | 22 | 43 | 3 | 177 | 17 | 40 | 69 | 8,665 |
| 慶南 | 326 | 24 | 162 | 115 | 22 | 6 | 155 | 9 | 44 | 161 | 11,656 |
| 慶北 | 72 | 30 | 63 | 25 | 5 | 3 | 95 | 6 | 57 | 68 | 5,392 |
| 江原 | 21 | 6 | 38 | 10 | 6 | 6 | 22 | 5 | 9 | 38 | 2,162 |
| 濟州 | 65 | 24 | 50 | 8 | 5 | 6 | 23 | 3 | 21 | 23 | 3,291 |
| 合計 | 955 | 144 | 489 | 213 | 98 | 33 | 784 | 59 | 282 | 542 | 45,977 |

資料：水協中央會「漁村契實態調查」上卷(總括表) 96面

施設을 援用하고 있다는 셈이 된다. 그런데 漁村契는 事實上의 1個以上の 自然部落을 包含하고 있는바 實際 漁業生產에 있어서의 온갖 行程은 「漁村契」單位하기 보단 自然部落單位로 이루어지는 境遇가 많음을 想起한다면 위의 現象은 더욱 尤甚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給水나 給油施設이 極少하다는 事實이다. 이는 漁村契가 營爲하는 漁業生產이 主로 5톤 未滿의 小型 無動力船에 依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마을文庫를 갖추고 있는 契가 542個所에 達하고 있음을 다음에 살펴 보는바와 같이 「漁村契」가 社會 文化的 方面에도 제법 機能하고 있음을 傍證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資金은 現代經濟機構下에서는 萬能이라 할 수 있으리 만큼 重要한 生產要素이다. 그것은 或은 物的手段에도, 或은 人的要素의 動員과 訓練에도 쉽게 容態를 바꿀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에 現代生產에 있어선 가장 動態的 生產要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 漁民이 近代的 資本制漁業에로 成長하지 못하고 原始的 沿岸漁業의 離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貧困의 惡循還過程을 헤어나지 못함도 決局 거기 所要되는 資本의 蓄積이 不足하기 때문임은 周知하는바와 같다. 自己資本이 마련되지 못할 때 他人資本에 依存해야 함은 當然하거니와 他人資本을 動員할려고 하는 境遇 人的 或은 物的擔保를 要求하는 것이 金融의 基本生理이다. 그리하여 漁村契는 漁民相互間의 自助團體로서 水產資金의 幹旋과 配定에 있어서도 또한 主體의 구실을 하고 있거니와 1966年度에 漁村契가 幹旋한 水產資金의 總額은 表25에서 보는바와 같이 658,465千원으로서 이를 契員 一人當 平均值를 算出해 본다면 5,136원이며 一契當 平均 借入額은 324,400원에 達하고 있다. 이를 當年의 農民 一人當 財政資金을 包含하는 公共資金借入額 9,800餘원과 比較한다면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第25表은 漁協의 水產資金 貸出臺帳에서 漁村契員에게 貸出된 資金만을 別途把握한 것인데, 資金의 內容을 分析해본다면 總借入金의 55%가 營漁資金으로 쓰이고 있으며, 養殖資金은 25%에相當하는 166,743千원을, 漁船建造資金은 16%인 104,761원, 漁村振興資金엔 1.5%인 7,501千원, 其他部門엔 2.5%인 15,398千원이 각각 配定되고 있다. 地域別로 살펴본다면 全西支部, 全東支部, 慶南支部의 順이며 이는 上記 各地域이 包含하고 있는 漁民과

<表 25>

漁村契員의 水產資金借入狀況

1960年 單位：千원

| 支 部 | 營漁資金 | | 養殖資金 | | 漁船建造 | | 漁村振興 | |
|-----|---------|------|---------|------|---------|------|-------|------|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金額 | 比率 % |
| 京 畿 | 34,733 | 69 | 910 | 2 | 11,547 | 23 | 600 | 1 |
| 忠 南 | 23,715 | 64 | 7,239 | 20 | 5,122 | 14 | 61 | |
| 全 北 | 24,362 | 87.6 | 3,413 | 12.2 | | | | |
| 全 西 | 40,571 | 29 | 82,053 | 60 | 12,142 | 9 | 2,085 | 1.5 |
| 全 東 | 42,214 | 34 | 62,258 | 51 | 13,724 | 11 | 1,282 | 1 |
| 慶 南 | 80,351 | 68 | 10,328 | 9 | 25,968 | 22 | 835 | 1 |
| 慶 北 | 51,515 | 71 | 542 | 1 | 14,632 | 20 | 1,558 | 2 |
| 江 原 | 51,877 | 75 | | | 14,811 | 21 | 250 | 1 |
| 濟 州 | 14,724 | 63 | | | 6,815 | 29 | 830 | 3.5 |
| 合 計 | 364,062 | 55 | 166,743 | 25 | 104,761 | 16 | 7,501 | 1.5 |

| 支 部 | 其 他 | | 合 計 | | 契員一人 當借入額 | 契 當 借 入 額 |
|-----|--------|-------|---------|-------|--------------|--------------|
| | 金 額 | 比 率 % | 金 額 | 比 率 % | | |
| 京 畿 | 2,855 | 5 | 50,645 | 100 | 6.2 | 313 |
| 忠 南 | 632 | 2 | 36,769 | 100 | 5.3 | 228 |
| 全 北 | 50 | 0.2 | 27,825 | 100 | 1.6 | 548 |
| 全 西 | 779 | 0.5 | 137,630 | 100 | 5.4 | 242 |
| 全 東 | 2,805 | 3 | 122,283 | 100 | 4.6 | 259 |
| 慶 南 | 548 | | 118,030 | 100 | 4.1 | 250 |
| 慶 北 | 4,492 | 6 | 72,739 | 100 | 5.5 | 430 |
| 江 原 | 2,180 | 3 | 69,118 | 100 | 8.0 | 793 |
| 濟 州 | 1,057 | 4.5 | 23,426 | 100 | 1.8 | 235 |
| 合 計 | 15,398 | 2.5 | 658,465 | 100 | 5.3 | 313 |

資料：水協中央會「漁村契實態調查」1967. 上卷에서 作成

漁村契員이 가장 많은 點을勘案할 때 當然하다 하겠다.

漁村契員의 共同作業에 있어서는 구태여 統計數字를 引用할 必要도 없으며 또한 引用할 수도 없는 形便이지만 漁村契 自體가 本來 共同勞動에 基한 生產手段(漁場)의 共有를 軸心으로 하여 成立된 것임을 생각할 때 共同作業의 機能은 漁場에 對한 總有權의行使와 함께 가장 基本的인 機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漁村契의 共同勞動의 形態에 對해서는 이미 第一章에서 살펴 본바 있으므로 여기에선 그 具體的인 內容의 含味는 생략하기로 하겠거니와 共同採藻와 共同磯洗, 養殖漁業에 있어서의 共同漁撈 및 共同捕具, 船引網漁業이나 地引網漁業에 있어서의 共同漁撈 및 編網 등, 實로 多方面에 걸쳐서 行하여지고 있는 實情이다.

위에서 우리들은 漁村契가 生產過程에서 行하는 役割을 中心으로 그 經濟的 機能을 살펴보았거니와 그와 같은 機能은 漁業生產에 어떻게反映되고 있는지 잠깐 알아 보기로 하자.

全國 漁村契 管內의 1966年 總生產量은 養殖高를 包含하여 497,752.8%으로서 이는 當年 우리 나라 水產物生產高 610,082%에 對한 6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韓國 總漁家(漁撈+養殖) 236,505戶에 對比한 漁村契 管內의 漁戶家數는 80%를 차지하고 있음에 反하여 그 生產의 比重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漁村契 圈外에 있는 水產業 從事者中相當數가

遠洋漁業을 包含하는 大規模 企業漁業에 從事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沿岸漁業을 거의 代表한다고 말할 수 있는 漁村契管內의 總生產量 497,752.8%에 對한 漁村契員의 生產量은 326,547.8%으로서 管內 總生產量에 對한 66%를 占하고 있는 바 이는 管內 總漁家에 對한 契員(漁家)의 加入率 66%와 이상하리 만큼 잘一致하고 있다. 이는 管內 漁家戶當 平均生產量(2,544kg)과 契員一人當 平均生產量(2,547kg)의 比較에 있어 서도 거의 비슷한 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契員生產量 326,547.8%은 當年 우리나라 水產物生產高 610,082%에 對해서 48%밖에 占하지 못하여 契員의 總漁家에 對한 比率 55%에 比較한다면 亦是 漁村契管內 및 漁村契員이 營爲하는 漁業의 零細性과 低生產性을 잘 읽을 수 있는 것이다.

<表 26>

漁村契管內의 水產物生產

1966.

| 支 部 | 管內總生產量 | | 契員生產量 | | 比 率 B/A % |
|-----|-----------|---------|-----------|---------|-----------------|
| | 全生產量 (A) | 漁家當量 | 契員生產量 (B) | 契員一人當產量 | |
| 京 畿 | 28,870.3% | 2,509kg | 26,216.3% | 3,201kg | 91 |
| 忠 南 | 25,015.1 | 2,209 | 22,611.1 | 3,337 | 90 |
| 全 北 | 18,347 | 2,334 | 12,297 | 7,063 | 67 |
| 全 西 | 59,032.2 | 1,763 | 38,031.5 | 1,480 | 65 |
| 全 東 | 54,907.3 | 1,544 | 38,428.1 | 1,419 | 70 |
| 慶 南 | 129,507.6 | 3,170 | 84,723.9 | 3,486 | 65 |
| 慶 北 | 65,554.2 | 3,249 | 36,936.2 | 2,731 | 56 |
| 江 原 | 104,395.4 | 6,147 | 57,730.6 | 6,775 | 55 |
| 濟 州 | 12,123.7 | 676 | 9,573.1 | 775 | 79 |
| 合 計 | 497,752.8 | 2,544 | 326,547.8 | 2,547 | 66 |

資料：水協中央會「漁村契實態調查」1967. 上卷 30面

한便 이러한 生產量을 地域別로 比較해 본다면 비록 地域別 水產物의 構成內容이 相異하여 絶對的인 尺度는 되지 못한다고는 하드래도相當히 큰 地域隔差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即 契員의 總生產量에 있어서는 慶南 江原의 順임에 反하여 契員一人當 平均生產에 있어서는 全北의 7,063 kg 이 第一位 江原道의 6,775 kg 이 第二位로서 全北 水產業의 堅實性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또한 全國의 契員一人當 平均生產量 2,547kg 을 上廻하고 있는 곳은 前記 全北, 江原을 비롯하여 慶南, 忠南, 京畿, 慶北의 6個道임에 反하여, 未達되고 있는 곳은 濟州와 全南道 뿐이어서 이고장 水產物의 内容이 比較的 가벼운 海藻類 中心의 것이라는 點을勘案한다고 하드래도 平均值의 約 60%, 最高值의 約 20%에 未達하고 있음은 全南道 및 濟州道 水產業의 質的 後進性과 함께 沿岸漁村의 過剩人口相을 잘 엿볼 수 있다. 한便 이와같은 契員一人當 平均生產量을 當年の 우리나라 總水產家口의 平均生產量 2.6%에 比較하드래도 역시 떨어지고 있어서 漁村契員들이 營爲하고 있는 漁業의 零細性과 後進性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지마는 그러나 漁村契員의 平均生產量이 비록 漸進的이기는 하지만 年年이 增加一路에 있음을 볼 때 이러한 現象을 漁村契가 形成되기以前의 沿岸漁民의 貧困相--그 數字를 引用할 수 없음은 유감스러우나--과 比較할 때 漁村契는 (1)漁業에 있어서의 가장 重要한 漁場에 對한 權利行使의 主體로서 漁民들의 基本的 生命源이라 할 수 있는 地先漁場의 專有에 對하여 合法性을 賦與해 주며, (2)그 밖의 共同施

設斗 漁撈資金의 共同敷設斗 幹旋을 通해 漁民들의 漁業經營의 基盤을 마련해 주고, (3)漁村契가 共同作業의 編成 動員 및 實施등에 있어서 主體가 된다. (4)水產物의 共同製造·共同販賣 및 生活必需品의 共同購買등을 通過해서 流通過程에 있어서의 利益을 圖謀하는등 漁村의 經濟的 發展과 沿岸漁民의 經濟生活 向上에 寄與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漁村契는 이와같이 漁村社會에 있어서 항상 푸러스的인 구실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漁村契의 共同化는 비록 資本主義的 經濟機構에 있어서의 小商品 生產者인 零細漁家의 自己適應의 形態라고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아래와 같은 弊害가 發生한다는 點도 看過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로 漁村에로의 外部의 資本과 技術의 導入을 沮害하는 傾向이 있다. 다시 말하면 漁村內部에 自己資本의 蓄積이 貧困하고 그 技術이 未熟한 境遇에는 外部資本과 技術을 導入해서 沿岸漁業(特히 養殖業)의 開發와 漁業生產의 增進을 꾀하는 것이 國家的 見地에선 바람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現行法의 뒷바침을 받는 「漁村契」의 地先漁場에 對한 지나친 專有와 排他的 觀念은 外部資本과 技術의 導入을 沮害하여 結局 好은 漁場을 未開發의 狀態로 放置해 둠으로써 國家的 損失을 가져오는 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漁村契」가 行使하는 地先漁場의 專有權은 實際의으로는 村落共同體의 入會關係에 基하고 있기 때문에 漁村에서 漁港 그밖의 外地로 事實上 移住한 境遇라 하드래도 그곳에 家室나 財產의 一部만을 남겨놓고 가는 境遇에는 漁期에만 잠간 들어와서 共同漁業權의行使에 參加하게 하므로서 이는 漁村의 近代的인 分解를 沮止하고 貧困의 永久化의 一因이 된다 하겠다.

셋째로 이와같은 入會關係에 基한 共同漁業權의 行使의 可能性은 漁村의 過剩人口의 一因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萬一漁村에 이와같은 共同의 稼場이 없다면 次男以下の 漁村人口는 他業에로의 轉向에 안간힘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아직도 都市의 吸引力이 弱한 우리 나라의 境遇 그로 말미암은 社會의 問題는 一時 解決될 것이라고 볼 때 農山村은 勿論 都市에서 찾을 수 없는 漁村의 甚한 過剩人口를 막는 하나의 要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漁村契가 行使하는 上記 共同漁業權은 一段 都市에 나간 人口까지도 되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素因이 되고 있는 것임을勘案할 때 漁村契의 機能을 굳이 푸러스的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漁村契의 社會·文化的 機能

漁村契가 行하는 社會·文化的 機能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들어야 할 것은 「漁村契」가 漁村共同體의 後身으로서 行하는 漁村社會에 對한自治乃至自律的 機能이라 하겠다. 嚴格히 말할 때自治的 機能은 社會的 機能이라기 보단 그것 自體가 하나의 獨立된 機能으로 分離시켜 다루어야 할 것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선 地方行政力의 強化와 함께 거의 吸收되는 傾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선 論議의 便宜上 社會的 機能에 包含시켜 다루어 보기로 한다.

共同體는 本來 그 自體가 하나의 小宇宙로서 政治 經濟 社會 宗教등 共同體 成員의 生活全般이 未分化의 狀態 그대로 共同體가 항상 前面에서 作用하는 이미 數次 言及한바 있거나와 漁村共同體의 後身으로서의 漁村契도 비록自治的 機能이 漸次 弱化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盜賊行為의豫防·應懲, 共同賦役의 實施와 泰民자에 對한 應懲, 이웃사이의 싸움의

<表27>

自然部落數別漁村契約構成

1966.

| 漁協別 | 一部落 | 二部落 | 三部落 | 四部落以上 | 計 | 漁協別 | 一部落 | 二部落 | 三部落 | 四部落以上 | 計 |
|--------|-----|-----|-----|-------|----|-------|-------|-----|-----|-------|-------|
| (京畿)仁川 | 4 | 3 | 4 | 7 | 18 | 郡外山 | 24 | — | — | — | 24 |
| 平澤川翎 | — | — | 2 | 3 | 5 | 津營 | 18 | — | — | — | 18 |
| 富川 | 23 | — | — | — | 23 | 水 | 14 | 2 | 3 | 1 | 19 |
| 白 | 11 | — | — | — | 11 | 青康右 | 12 | 4 | 2 | 5 | 19 |
| 延大 | — | 1 | — | — | — | 松所 | 6 | — | — | — | 11 |
| 德龍 | 6 | — | 3 | — | 9 | 北薪 | 15 | — | — | — | 15 |
| 華江 | 5 | — | 2 | 2 | 10 | 智安 | 16 | — | — | — | 20 |
| (忠南)保寧 | 5 | — | 2 | 2 | 14 | 平山 | 15 | 4 | — | — | 15 |
| 洪長 | 17 | 1 | 1 | 2 | 20 | 黑靈 | 17 | 3 | 1 | 1 | 21 |
| 唐瑞 | 7 | 9 | 3 | 2 | 19 | 花島 | 14 | 3 | 1 | 1 | 19 |
| (全北)群山 | 19 | 8 | 2 | — | 29 | 安島 | 32 | 1 | 1 | 3 | 34 |
| 安音高 | — | 5 | — | — | 5 | 麗山 | 37 | 10 | 2 | 9 | 52 |
| 金完 | 4 | 3 | 3 | — | 11 | 水 | 68 | 1 | 1 | 1 | 71 |
| (全西)木浦 | 10 | 2 | 4 | 8 | 15 | 務鳥 | 28 | 2 | 5 | 9 | 35 |
| 古金 | 1 | 4 | 6 | 2 | 21 | (全東)突 | 15 | 7 | 6 | 6 | 37 |
| 莞 | 70 | 6 | 2 | 2 | 80 | 安巨 | 26 | 4 | 1 | 2 | 31 |
| 金蘆 | 15 | 4 | 2 | 1 | 25 | 筏文 | 7 | 1 | 4 | 1 | 3 |
| 浦 | 6 | 2 | 2 | 3 | 5 | 玉 | 20 | 2 | 5 | 2 | 12 |
| 塘島 | — | 2 | 4 | 4 | 13 | 老羅 | 28 | 4 | 5 | 2 | 32 |
| 日山 | 25 | 3 | — | — | 6 | 光 | 27 | 1 | 3 | — | 34 |
| 金蘆 | 19 | 1 | — | — | 5 | 長豐 | 58 | — | — | — | 61 |
| | | | | | | 錦鹿 | 28 | — | — | — | 28 |
| | | | | | | 山洞 | 23 | 2 | — | — | 26 |
| | | | | | | | 34 | 1 | — | — | 34 |
| | | | | | | | 57 | 1 | — | — | 59 |
| 漁協別 | 一部落 | 二部落 | 三部落 | 四部落以上 | 計 | 漁協別 | 一部落 | 二部落 | 三部落 | 四部落以上 | 計 |
| (慶南)海倉 | 42 | 8 | 4 | — | 54 | 厚丑 | 14 | — | — | — | 14 |
| 面南亭 | 17 | 3 | 1 | — | 21 | 竹九龍 | 12 | 1 | 1 | — | 14 |
| 面子 | 6 | 5 | 2 | — | 13 | 江良甘 | 16 | 5 | 1 | — | 22 |
| 方長 | 6 | 3 | — | — | 9 | 江原也 | 20 | 8 | 3 | 1 | 22 |
| 溫西 | 4 | 2 | — | — | 6 | 我東注 | 14 | 2 | — | 1 | 18 |
| 機金熊鎮 | 13 | — | — | — | 13 | 江文 | 10 | 10 | 1 | 1 | 17 |
| 烏長冠巨 | 8 | 1 | — | — | 9 | 江墨三 | 11 | 10 | — | 1 | 16 |
| 城閔欲統 | 9 | — | — | — | 20 | 遠濟州 | 6 | — | — | — | 5 |
| 固三南河釜 | 3 | 2 | 1 | — | 3 | 陽陵湖 | 12 | — | — | — | 11 |
| 千浦項 | 4 | 3 | 3 | 1 | 4 | 也 | 31 | — | — | — | 10 |
| (慶北)浦項 | 13 | 15 | 8 | — | 21 | 文 | 17 | — | — | — | 6 |
| 承 | 19 | 3 | — | — | 21 | 江墨三 | 24 | 6 | 2 | 1 | 13 |
| 烏長冠巨 | 2 | 5 | 4 | — | 18 | 遠濟州 | 18 | — | — | — | 12 |
| 城閔欲統 | 24 | 1 | 3 | — | 28 | 陽陵湖 | 13 | — | — | — | 34 |
| 固三南河釜 | 10 | 3 | 3 | 2 | 50 | 也 | 28 | — | — | — | 17 |
| 千浦項 | 14 | 15 | 8 | 13 | 50 | 濟州 | 18 | — | — | — | 30 |
| | — | 8 | 9 | 2 | 13 | 濟州 | 50 | 30 | — | — | 5 |
| | 6 | 7 | 2 | — | 19 | 歸西 | 3 | — | — | — | 13 |
| | 42 | 19 | 8 | 1 | 20 | 子山 | 10 | 3 | 2 | — | 12 |
| | 16 | 5 | 3 | 2 | 35 | 濟州 | 12 | — | — | — | 34 |
| | 12 | 5 | 2 | — | 35 | 濟州 | 31 | — | — | — | 17 |
| | 33 | 2 | — | — | 35 | 濟州 | 17 | — | — | — | 30 |
| | | | | | | 計率 | 1,568 | 272 | 151 | 114 | 2,105 |
| | | | | | | 比率 | 75% | 13% | 7% | 5% | 100% |

資料：水協中央會「漁村契實態調查」

和解, 不孝와 不敬者에 對한 應懲, 外部侵入(共同漁場의 侵犯)으로부터의 共同防衛등등 아직도 自治的 統制의 機能을 뚜렷이 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가지 밝혀두지 않으면 아니 될 事實은 漁村의 自然部落이 아닌 「漁村契」가 이와같은 自治的 機能을 하는가 하는 點이다. 私見에 依하면 漁村契도 能히 이와같은 마을의 統制機能을 發揮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거니와 그 事由를 아래 몇가지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漁村契의 組織이 行政上의 里單位보다도 自然部落의 單位로 되어 있으며 비록 二個以上의 自然部落을 包含하는 境遇라 하드래도 作業 其他の 諸般事項이 部落單位로 營爲되고 있다는 點이다. 第28表는 1966年末 現在 全國에 組織되어 있는 漁村契의 自然部落 包容狀態를 말해 주고 있는데 그에 依하면 一部落 一契의 곳이 1,568個所로 絶對多數(75%)이며, 二部落이 한契를 이룬 곳이 272個所, 三個部落이 모여 한契를 이룬 곳이 151個所, 四部落以上이 모여 한契를 이룬 곳은 114個所로 全漁村契의 5%에 不遇할 뿐만아니라 그런 곳은 大概 共同體로서의 自然部落의 性格이 크게 破壞되어 漁村契가 純粹한 하나의 產業的 團體로만 機能하고 있는 都市(仁川, 木浦, 群山, 忠武, 金海의 漁港)인 反面, 외진 섬으로 들어 갈수록 一部落 一契의 現象이 뚜렷함을 볼 때 우리들의 主張을 더욱 잘 肯定한다 하겠다.

둘째로 많은 漁村契에 있어서 漁村契長과 行政上의 里長이 兼任하는 일이 많다는 事實이다. 비록 自然部落 單位로 漁村契가 形成되었다고 하드래도 그것이 單純한 하나의 經濟上의 生產有機體에 머물 수도 있다. —이러한 現象은 上記 數個部落을 包含하는 都市 近郊의 漁村契에선 뚜렷이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大半의 漁村契는 單純한 經濟的 生產有機體 以上의 自治的 生活有機體의 구실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事實은 例컨데 (1) 里長과 漁村契長이 兼任하는 곳이 많으며 (2) 漁村契의 作業上의 班編成이 大體로 行政上의 里의 班과 一致하고 (3) 里事務所와 漁村契의 事務所는 거의 完全히 一致하는데 설령 漁村契長과 里長이 一致하지 않는 境遇에도 그렇다는 點등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하겠다.

셋째로 들 수 있는 點은 위의 事實의 必然的 結果로서 漁村契의 會議에서 村中 協議事項이 協議되는 일이 많으며 그 逆의 境遇도 마찬가지라는 點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漁村契가 自治的 機能을 違行할 수 있는 根源은 어디있는 것일까? 그것은 漁村契가 行使하고 있는 地先漁場의 共同漁業 經營에 있어서 漁民들에게 加해지는 耕區強制 및 共同態規制 바로 거기에 根據한다 하겠다. 따라서 漁村契가 그 마을에서 共同漁業의 主體로서 機能이 強化되면 될 수록 이러한 自治的 機能은 더욱 더 커져간다고 말할 수 있다.

漁村契가 行하는 第二의 社會的 機能은 契員(村民)들 사이에 協同心을 기루고 나아가서 相扶相助와 親睦의 구실을 다 한다는 點에서 아 찾 볼 수 있다. 漁村契는 共同漁場에 있어서의 共同作業을 그 成立의 主軸으로 삼고 있거니와 거친 바다와 목숨을 걸고 함께 일하는 사이에 「죽음을 媒介로 하는」 共同運命感이 더욱 굳어져 거친 바다에선 勿論 日常生活에 있어서도 協同과 相助의 美風이 農山村에 比하면 훨씬 짙다. 이는 바다에서의 共同勞動이 끝나면 으로 비록 간단하지만 潤酒와 음식을 나누며 談笑하는 風習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自己마을 内部에서의 지나친 團結과 協同은 外部에 對해서는 排他性으로 發展하여 往往히 入會漁場의 境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격렬한 싸움의 番이 되기도 한다. 이 點은 共同體가 지니고 있는 固有의 二重道德, 即 成員間의 友愛와 平等이라는 對內道德과 非成員에 對한 排他와 獨占이라는 對外道德에서 發源하는 것으로서 漁村共同體의 後身인 「漁村契」의 宿命의 性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漁村契」가 行하는 第三의 社會的 機能은 「漁村契」가 契員相互間에 意思交換과 뉴우스

를 교환하는 廣場이 되고 있다는 點에서 찾을 수 있다. 個個人의 意思疎通이一般的으로 閉鎖되어 있는 우리 社會에서 漁村契員들은 年年이 定期의으로 開催되는 漁村契의 定期總會를 비롯하여 共同作業을 為해 合同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相互意思와 뉴우스를 교환하는 것 이지만 그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點은 「漁村契」마다 그들의 收入中의 一部를 마을의 共同施設에 投下하여 마을에 洞廳乃至 公會堂(事務所)을 마련하여 마을의 모임은勿論이거나 와 日氣不順으로 出漁하지 못하는 날이나, 出漁로부터 歸村한 村民이 모여 意見과 뉴우스를 교환한다고 하는 事實이다. 이러한 事實은 前揭 表2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事務室(公廳)을 마련하고 있는 漁村契가 784個所로서 全漁村契員의 37%에 達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他面 다음 表2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漁村契가 中心이 되어 發電施設을 갖추고 나아가서 엠프를 施設하므로서 집집마다 얹은채로 뉴우스와 漁業氣象, 漁業改良 및 生活改善의 知識을 얻게 하고 있다는 點에서 漁村契는 意思와 뉴우스 교환의 廣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教育의 廣場이 되고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제로 들 수 있는 漁村契의 社會・文化的 機能은 「漁村契」가 漁村에 있어서의 教育과 文化的 セン타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點이다. 「漁村契」가 엠프施設을 갖추어 뉴우스와 漁業氣象, 漁業改良 및 生活改良의 媒體의 구실을 하고 있음을 위에서 이미 言及한바와 같거니와 이밖에도 마을文庫, 라디오, 新聞 및 其他 定期刊行物등을 마을의 公廳의 구실을 하고 있는 漁村契 事務室에 갖추어 둠으로써 教育과 文化的 セン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表28은 全國의 「漁村契」에 施設되어 있는 文化施設의 內容이다.

<表28> 漁村契 文化施設狀況 1966.

| 支 部 | 漁 村 契 數 | 發電施 設을 갖 춘 漁 村 契 | 엠프施 設된 漁 村 契 | 契員數 | 마을文庫 | | 라디오 | 新 聞 | 其 他 刊行物 |
|-----|------------|---------------------------------|--------------------------|---------|------|--------|--------|--------|------------|
| | | | | | 個 所 | 卷 數 | | | |
| 京 畿 | 130 | 9 | 16 | 8,189 | 45 | 1,978 | 4,325 | 1,125 | 427 |
| 忠 南 | 161 | 10 | 27 | 6,775 | 24 | 1,482 | 3,755 | 812 | 436 |
| 全 北 | 49 | 6 | 10 | 1,741 | 16 | 1,091 | 1,657 | 477 | 187 |
| 全 西 | 487 | 26 | 212 | 25,725 | 98 | 10,260 | 7,899 | 5,350 | 5,593 |
| 全 東 | 473 | 57 | 159 | 27,079 | 69 | 8,665 | 8,027 | 6,244 | 4,442 |
| 慶 南 | 450 | 104 | 264 | 24,306 | 161 | 11,656 | 10,085 | 5,664 | 2,629 |
| 慶 北 | 169 | 48 | 45 | 13,525 | 68 | 5,392 | 5,044 | 4,138 | 2,728 |
| 江 原 | 87 | 35 | 31 | 8,521 | 38 | 2,162 | 4,441 | 3,553 | 1,013 |
| 濟 州 | 99 | 18 | 23 | 12,355 | 23 | 3,291 | 6,473 | 3,860 | 2,018 |
| 合 計 | 2,105 | 313 | 787 | 128,216 | 542 | 45,977 | 51,706 | 31,223 | 19,473 |

資料：水協中央會「漁村契實態調查」1967. 上卷

送發電施設을 갖춘 漁村契數는 1966年末 現在 313個所로 全漁村契의 約 15%밖에 안되지만 여기에서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은 都市의 發電所로부터 送電해온 境遇는 江原道를 除外하곤 극소수에 不遇하며 大部分이 自體資金에 依해서 마련한 自家發電이라는 點이다. 엠프施設을 갖춘 漁村契는 787個所로서 全漁村契의 37%에 達하고 있음을 이미 言及한바 있거니와 이를 契員들의 라디오 保有率 40% [平均 2.5名(戶)當 一臺]와 어울려 分析해 볼 때 漁民들의 放送 利用率은相當히 높다 하겠다. 이는 漁村契의 新聞 購讀率 24%와 比較할 때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漁村의 地理的 的條件의勘案할 때 理解할 만한 일이다. 「漁

村契」의 마을文庫 設置狀況은 全漁村契의 26%인 542個所의 漁村契가 갖추고 있으므로 아직 滿足할만 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542個의 文庫가 保有하고 있는 圖書數는 45,977卷에 達하여 漁村契當 22卷에相當한 셈이다. 各漁村契는 이와같은 文庫와 新聞, 라디오 그밖의 刊行物을 事務室에 備置하므로써 漁村契가 漁村의 文化와 教育의 센터의 구실을 하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漁村契의 機能은 「漁村契」가 祭祀共同體의 구실을 한다는 點이다.一般的으로 文明의 度가 낮은 前近代社會에 있어서는 한마을은 祭祀를 通해서 村民(漁民)의 生產(태풍, 해일 그밖의 天災로부터 벗어나서 豐漁를 빈다), 生活(질병 安產 死亡등), 人災(惡政, 戰爭등) 등一切의 禍福이 決定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堂(寺廟)에서의 共同祭祀는 마을로선 가장 墓村의이며 엄숙히 行였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村祭의 風習은 農村에서는 其間 크게 弛緩되어 있으나 漁村에서는 아직도 어떤 다른 遺制보다 強制하게 남아 있으니 漁村을 한번이라도 求景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바이지만 마을於口나 뒷켠 울창한 樹木사이에 모셔놓은 堂의 存在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筆者가 本研究를 為하여 漁村을 踏查한 調査結果에 依하면 調査에 應해온 40個 漁村契中 全部가 마을의 共同祭祀 項에는 한결같이 가장 성의있게 記錄하고 있었다. 그에 依하면 (1)祭祀는 墓村의으로 가장 純潔한 夫婦를 클라 精誠을 다하여 祀시며 (2)거기 所要되는 經費는 「漁村契」가 中心이 되어 經費를 각출하고 (3)祭祀에서 비는 일은 첫째 豐漁, 둘째 疾病으로부터의 免疫등 마을의 平和와 安寧이라는 點 (4)祭祀를 祀시는 時期는 陰 正初가 가장 많으나 四月初八日, 秋夕등의 順이나 곳에 따라서 特別히 그 마을에서 主로 잡히는 고기의 漁期의 初에 行하는 수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important한 事實은 이 祭祀에 마을의 온 갓 精誠이 다 기울여지고 그 結果(一年의 禍福)에 對한 責任도 村民들로 하여금 全的으로 이 祭祀에 對한 그들自身의 態度如何에 달렸다고 믿게 하므로써 村民의 共同體에의 絶對的인 恭順의 倫理와 意識을 자아내게 한다고 하는 點이다.

漁村에 있어서 아직도 이러한 村祭를 嚴修케 하는 決定的인 理由는 우리의 漁業이 科學的 漁具에 依하여 營爲되지 못하고 自然의 支配度가 큰 原始的 漁法에서 緣由하는 自然에의 畏怖感이라 하겠거니와 이와같은 共同行使를 主管하므로써 漁村契는 團結의 意識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漁村契가 行하는 機能가운데는 宗教的인一面이 있음을 看遇할 수 없다 하겠다.

以上의 諸機能을 綜合해 볼 때 漁村契는 漁業共同體의 後身으로서 沿岸漁村에 있어서의 生產과 生活의 여러面에서 協同體의 구실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要約과 結言

1. 韓國水產業은 古來로 天惠의in 自然與件을 자랑해왔다. 이에 反하여 이와같은 天惠의 水界를 開發하기 為한 人爲의in 努力 即 漁業生產의 勢力은 이른바 漁業에 있어서의 產業革命을 完遂하지 못한 채 量的으로 微少하고 質的으로 脆弱하여 原始的漁法에 依한 沿岸漁業에 蝦集하고 있어서 漁村의 過剩人口를 形成케 하고 나아가서 低生產力과 低所得의 惡循環을 거듭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1966年 水產人口의 對 總人口比重은 4.7%인데 反하여 水產業의 附加價值의 對 G.N.P. 比率은 0.8%(1960年 不變市場價格)에 不遇하다는 點에 잘 가타나 있다 하겠다. 그러면 이와같은 漁村의 貧困속의 過剩人口 現象을 扶持케 하

는 社會 經濟的 要因은 무엇일가. 筆者の 短見으로서 우리나라의 漁村에 있어서 古來로 뿐만 아니라 내려오고 있는 地先漁場의 總有와 入會關係를 基盤으로 한 共同經營 即 漁業의 村落共同體的 經營形態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韓國水產業의 近代化를 모색하는 過程에 있어선 이와같은 漁業共同體의 成立·展開·分解·現存樣態에 關해서 正確한 分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韓民族의 水界發은 韓民族의 韓半島 定住와 함께 오랜 것으로 推斷되거나와 비록 그것이 自然에 生育繁茂하는 魚芥藻類의 採捕에 그쳤다고 하드래도 거기에 하나의 秩序乃至體制가 싹이 났을 것이니 端初의인 漁業經營의 形態는 主農從漁의 臨海村民들의 共同勞動에 基한 共同經營의 體制를 取했으리라 믿어지거나와 이 時期에 아직도 漁業이 獨立된 生業으로 分化되지 못하여 獨自의인 漁業共同體가 成立되지 못하고 農業共同體의 再生產過程에 淪沒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體制는 社會의 分業의 發達과 漁業技術의 向上, 人口의 增加와 그에 따른 水產物 需要의 增加등에 作用받아 차츰 臨海의 村落이 半漁半農→主漁從農→純漁의 生業形態로 바뀌침에 따라 漁業은 그러한 村落에의 入會關係를 바탕으로 形成된 村落共同體에 依하여 그들이 總有하는 地先漁場에서 共同(共同生產→共同分配)으로 營爲된다. 우리 民族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이와같은 漁村의 漁業共同體가 確立하게 되는 것은 아직 研究史의 現段階로선 確定의인 統論을 내릴 수는 없으나 그것은 大體로 오늘날 보는바와 같은 沿岸漁村의 樣態가 定立한 때로 推定되는 바, 그러한 漁村의 定立은 中央集權의 封建體制가 갖추어진 高麗朝에 들어서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漁業共同體는 社會의 分業의 發達→漁業技術의 向上 및 그것을 위요하는 社會 經濟的 制度의 發展등에 副應하여 여러가지 推轉過程을 밟게 되거나와 그것은 꾸준히 아니,生生하게 殘存하여 오늘날에 있어서의 「漁村契」라는 形態로合法化 되어있다. 그 推轉過程은 第一章의 第二節以下에서, 現存樣態인 漁村契의 實態에 關해서는 第二章에서 다루어 보았다.

3. 그러면 漁業共同體의 共同漁業의 經營形態는 어떠했을가 文獻的 資料를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은 그 遺制에 關한 實態調査의 方法에 依했든바, 多幸히 韓國 西南海의 孤島 黑山島(특히 紅島)에 있어서는 미역의 共同採藻를 中心으로 거의 原型에 가까운 漁業共同體의 經營形態가 남아 있음을 發見할 수 있었다. 共同體의 經營形態의 內容은 이미 第一章 第二節에서 仔細히 吟味해 본바와 같이 入會制度에 基한 漁場과 그밖의 漁業生產手段의 總有, 共同作業, 耕區強制, 共同體意識의 二元性 등 西歐 封建社會下의 農業共同體에서 보여지는 共同體의 再生產機構가 그대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共同漁業 樣態는 비단 黑山島 미역採取뿐 아니라 다른 落島에 있어서도 미역, 天草, 苗초등과 같이 거의 人爲的(資本的) 養殖植物이 아니고 自然的으로 生育繁茂하는 賦存水源의 單純한 採貝, 採藻業(第一種 共同漁業權)을 主로하는 漁村에선 그대로 作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에 對하여 漁業技術의 發達은 入會關係에 基한 共同漁業을 變質乃至 分解시킨다. 共同(入會)漁業의 分解度는 大體로 當該漁業에 있어서의 資本의 投入度와 相關關係에 있어서 海苔나 고박, 반지락등의 資本의 投下를 必須條件으로 하되 그 額이 少額으로서도 可能하며 漁場自體가 地先의 例外에서만 成立하고 同時に 漁場의 豐度와 海況등 自然的 與件에 支配됨이 큰 漁場에서는 韓國 西南海岸의 海苔生產地인 9個 漁村의 實態調査에서 보는바와 같이 共同漁業은 單純히 共同體의 弛緩이라는 程度로 變質되고 있음에 反하여, 똑같이 沿岸의 淺海를 漁場으로 하면서 大資本의 投下를 所要로 하는 各種 定置·船引·地引網 등 沿岸의 特種 網漁業에선 共同(入會)漁業은 完全히 分解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들 定

置・船引・地引網漁業에 있어서의 分解過程은 入會漁業에서 곧 바로 資本制的 個別經營으로 옮아온 것이 아니고 반드시 契나 組合등과 같은 共同經營의 形態를 一段 거쳐 資本制的 個別經營으로 發展했음을 알 수 있다.

5. 그러면 아직도 漁業에 있어서의 產業革命을 完遂치 못한 오늘날의 韓國 漁村에 있어서 큰比重을 點하고 있는 沿岸漁業의 經營形態는 어떠할까? 그것은 漁村契는 漁業共同體의 後身에 依해서 協業漁業이라는 形態로 管爲되고 있다. 1966年末 現在 全國의 漁村契는 2,105個所로서 管內漁家의 66%를 包含하고 있으며 그 生產額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比重을 占하고 있다. 오늘날 漁村契가 行하는 구실은 經濟的으로는 地先漁場의 專有權(漁業權)을 行使하므로서 零細漁民의 生活의 터전을 確保하고 있을 뿐 아니라 社會的으로 村落의 自治와 相扶相助의 機能으로서 或은 意思疎通과 ニュウス交換의 センタ로서도 機能하고 있다. 同時に エン프의 施設, 마음文庫의 設置, 新聞의 購讀등을 通해 文化的 機能도 다하고 있으며 漁村民에게 가장 重要하고 또한 絶對的인 村祭를 主管하므로써 祭祀共同體의 구실도 또한 遂行하고 있으므로 漁村契는 漁村民의 生產有機體라기 보단 오히려 生活의 有機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그러면 우리 漁村에 있어서 先進 西歐諸國에 선 찾아 볼 수 없으며 우리 農村에 있어서도 그 類例를 찾아보기 힘든 共同體가 그 殘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理由는 무엇이며 이러한 共同體의 慣行은 우리 社會의近代化過程에 있어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對하여 잠간 살펴보므로써 結言에 가름하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共同體가 存立하기 為해선 다음과 같은 두가지 要素를 必要로 한다. 그하나는 한便에 生產手段의 全體에 依한 總有가 存在하고 他便에 全體의 構成要素인 個=家家의 私有가 存在한다. 그러나 個(私有)만으로선 充分한 獨立性을 갖지 못하여 따라서 어떤 形態로든지 全體(의 總有)에 依存하지 않는다면 안된다는 事實의 存在, 바꿔 말하면 全體가 個에 對하여 어느 程度의 社會保障의 役割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個에 依한 所有가 거의 平等性을 거쳐 相互 뚜렷한 隔差를 갖지 않을것, 바꿔 말하면 階層의 未分化가 支配의 일것¹⁰²⁾, 이 두가지이다. 即 充分한 獨立性을 갖지 못한 個個의 成員이 거의 平等하게 共同體에 依存치 않을 수 없는 境遇 그 逆規定으로서 共同體 規制가 現象하게 되어 이러한 生產手段의 總有와 共同體 規制를 지렛대로 하여 共同體는 存立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要素는 產業革命의 完遂에 依하여 消滅되는 것이 普遍的인 歷史의 發展過程이었다. 따라서 萬一 우리 漁村에 上記 두 要素를 基盤으로 하는 漁業共同體가 存立하고 있다면 그 바탕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漁村과 漁業에 있어서 產業革命이 完遂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緣由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漁業의 產業革命은 漁船의 動力化와 漁具의 科學化를 軸으로 하는 漁業技術의 革新을 始發點으로 하여 漁村의 社會 經濟의 變革과 漁民들의 意識構造의 合理化에 걸치는 實로 廣範圍한 變革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 變革이 示顯하는 具體的인 現象은 (1)漁場의 構造面에 선 沿岸漁場으로부터 遠·近海漁場으로의 外延的 擴張과 沿岸漁場의 單純한 採捕的 利用으로부터 一般的 的 養殖이라는 內包의 深化로 바뀌지며 (2)漁業經營의 面에 선 共同漁場·共同出役·共同分配의 共同漁業에 寄食하는 漁家經營으로부터 資本制的 企業經營으로 變遷한다. (3)漁村의 階層構造에 있어선 資本의 原蓄過程에서 必然的으로 나타나는 兩極分解를 겪어 漁業資本家와 漁業賃勞動者로 分化되는 것이 一般的인 樣相이다. 그런데 韓國의 漁村에선 그 近代化過程에 있어서 이와같은 變

102) 山岡築市, 「漁村社會學の研究」 254面 參考

革이 漁村內部에서 밀으로부터 自律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써近代化의 프러시아型一그대로 二重構造를 溫存시켜 왔기 때문에 大部分의 沿岸零細漁民은 分解以前의 小商品生產的漁家로서 漁業을 經營치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資本없는 그들에게 基本의이나마 生命을 維持케 하는 길은 地先漁場의 總有를 바탕으로 하는 共同經營의 길以外엔 따로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漁業共同體(漁村契)를 存命케 하는 歷史의이오 同時に 社會 經濟의 인要因이었던 것이다. 漁業共同體의 存立을 可能케 하는 다른 하나의 理由는 上記 事由의 一端에 對한 決局 同曲異調라 할 수 있겠으나 漁業에 있어서는 그近代化 過程에 있어서 農業에서 보는 것처럼 土地調查事業(1910. 3. ~1918. 11.)이나 農地改革(1950)과 같은 基本的生產手段의 私有化가 進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法律로서 漁場의 總有化가合理화되고 있다는 點이라 하겠다.

끝으로 漁業共同體를 存立케 하는 세번째 事由는 漁業生產의 技術的性格에서 찾을 수 있으니, 漁業은 本來 原始的 產業으로서 分野에 따라서는 技術革新의 導入에 限界가 있고 오히려 共同勞動에 依한 便이 漁場의 生產性을 높이는 수도 있다. 여기에 共同勞動을 軸으로 하는 漁業共同體의 存立이 可能한 理由의 하나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같은 漁業共同體의 遺制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筆者の 短見으로선 적어도近代化가 工業化를 中心으로 하는 資本制의 企業經營形態를 意味하는 限結局止揚되어야 하며 또한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近代化의 展開過程에 있어서 水產業은 사양화의 度가 커갈 것이고 都市의 人口吸引力이 커짐에 따라 漁村의 過剩人口가 解消되면 單純漁撈를 바탕으로 하는 沿岸漁業의 共同體的經營은 그存立의 軸이 무너질 것으로豫見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實은 또한 筆者가 踏查한 많은 漁村이 그들의 開發可能한 養殖場의 開發를 為해 外部資本의 導入을 歡迎하고 있다는 點으로 미루어 보드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祝 經濟學研究 第20輯 發刊

博英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8-4

(74) 4790 · 3790